

천차만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10년

기념 에세이

천차만별



천차만별

2011년 11월 25일 초판 발행.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펴냈습니다. 글은 공병조·김성혜·서미현·우지은·유수정·이수지·이수진·이연희·이영화·이유정·추현숙이 쓰고, 강우근이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은 산티출판사, 인쇄는 영프린팅에서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6 금세기빌딩 9층이고, 담당부서는 차별조사과이며 연락처는 02-2125-9861입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32-01
ISBN 978-89-6114-242-7 93330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사건 조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1,330건의 차별 사건을 접수하였고, 그 가운데 2,990건은 권고,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10명 가운데 4명에게 구제조치를 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과 성과에도 차별을 당했다는 국민의 사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접수됩니다. 그 가운데는 생각지 못했던 사연들도 접수돼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한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념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차별 분야에서는 '차별시정 10년, 차별의 재발견'이란 제목 아래 세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권고한 차별 사건에서 사회적 의미가 큰 10대 차별시정 사건을 선정했으며, 그동안의 차별 사건을 토대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념토론회도 준비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천차만별>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천차만별>은 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차별사건 가운데 우리 일 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 쓴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차별을 겪은 국민의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차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반면교사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통합하는 공동체로 가는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천차만별>을 펴내며 새삼스레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를 찾았던 진정한 한분 한분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도 그런 연유였습니다. 그분들이 국가인권위를 찾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차별 사례와 경험들을 축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왔지만, 여전히 둘러볼 현장도 많고 들어야 할 사연들도 많습니다. 다시 앞으로 10년을 향해 걸어가는 국가인권위에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11.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명철**

이 책을 읽기 전에

6,330,000.

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차별’을 입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검색한 결과다. 하루에 1,730여 건의 차별이 인터넷에 오르는 셈이다. 물론 검색된 모든 차별이 인권을 애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차별이란 단어가 이미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상당한 수의 차별은 사람이 가진 평등할 권리와 연관이 깊다. 그래서 ‘차별이다’는 말을 듣게 되면 ‘누가? 무엇을?’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누가, 무엇을 차별할까!

국가인권위는 이 질문에 가장 충실히 답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나이를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학력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질병을 이유로, 또는 종교, 용모,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를 찾았다. 그런 시간이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다.

〈천차만별〉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10년간 펼쳐온 차별 시정 활동의 성과를 다른 목적으로 펼쳐보았다. 그 성과를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차별에 대한 감

수성이 높아질수록, 차별에 더 저항하고 차별을 덜 받으며 또한 남을 차별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10년 전 국가인권위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이며, 현재도 또한 미래도 지향해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

〈천차만별〉은 이를 위해 편집 구성을 한 사람의 일대기에 맞췄다. 초·중·고 학교생활로부터 시작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삶의 흐름을 따라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직장생활은 직장에 입사하는 과정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급여를 받을 때, 직장에서 나오게 될 때 겪는 차별로 나눠 엮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건(본문 중 별색 문장)들 가운데 각 시기에 접할 수 있는 차별 사례를 선정해 이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천차만별〉 집필에는 자유기고가 등 열한 명이 참여했다. 이번 원고를 청탁하면서 필자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 주문을 보냈다. 첫째는 진정 사건을 다룰 때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근거들이 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필자 자신이나 주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글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주문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글에서 거론되는 사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이라고 판단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이었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내용은 유사하지만 차별인지 여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혼돈을 최소화하려 했다. 이 점에서 필자들은 주문을 잘 받아들여주었다.

두 번째 주문은 글 한편 한편이 좀 더 친근감을 갖고 독자와 만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였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건들은 법리나 논거 등이 토대가 돼 딱딱하게 마련인데, 그 외형을 조금 부드럽게 다듬었으면 바람이었다. 자신의 경험과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연계해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여기에 실린 대부분의 글에는 필자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따라서 글을 읽다보면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천차만별>에 실린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근거나 법률 등은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제

결정문을 보고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게재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피해자를 구제했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래서 사건을 유발한 회사나 기관의 이름은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밝혔고, 대부분의 글에서는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게재된 본문 글에 실린 사람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세상을 바꾸는 첫 행동은 관심이다. 내가 차별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은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천차만별>이 우리 사회를 차별 없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면,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난 뭉은 다한 듯싶다.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에 부쳐 4
이 책을 읽기 전에 6

1. 학교에서 차별도 배우다

번호가 아니라 배려를 가르쳐주세요 16 | 80점 이하는 반장 자격 없습니다 19 | 시험이 끝난 후, 아이들은 분류된다 22 | 우수 학생만 따로 모이세요 25 | 퇴학생이 잃은 건 학습받을 권리 28 | 학생회장 후보, 학생부장이 골라드립니다 31 | 임신한 여고생에겐 오직 자퇴뿐 34 | B형 간염 편견이 막은 기숙사 입사 37 | 더 많은 남자 미용사를 만나고 싶다 40 | 검정고시 출신, 수시모집 안 돼 43 | 비행사는 모두 군 조종사가 되라 46 | 장애인 박사과정 해내겠어요? 49 | 장학금, 학벌 따라 드립니다 52 | 병설 로또는 교직원 자녀만 오세요 55 | 직업재활, 외국인은 사절합니다 58 | 한센인은 정보화 교육 받을 수 없어요 61

2. 취업하려다 차별을 만나다

사장님, 태권브이라도 뽑으시게요? 66 | 인재를 놓치는 질병, 선입관 69 | 색각 이상자,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72 | 간호사는 여성만? 먼저 능력을 보라 75 | 여성이 보건위생감시원 할 수 있겠어요? 78 | 출산 후엔 직장 다시 못 와요 81 | 이혼녀는 특전사 안 돼 84 | 비행기 승무원에게 숨어 있는 1인치 87 | 장애, 의식하되 의식하지 않기 90 | 범죄율 낮추는 방법 93 | 양치기 소년도 행복할 권리 96 | 누군가에게만 유리한 영통한 것대 99 | 우리 동네 거주자만 공무원으로 모집니다 102 | 고졸은 국제 테러리스트를 잡을 수 없다 105 | 학벌, 어디까지 따라올래? 108 | 우리 대학 교직원 은 신앙인만 오세요 111 | 미션스쿨 교수의 조건 114

3. 직장에 차별이 스며들다

체중 감량 못하면 회사 나가세요 120 | 남자만 승진하는 어느 회사 123 | 왜 학생주임은 항상 남자일까? 126 | 육아휴직 끝났으면 퇴사하라 129 | 정규직과 상담하고 싶어요 132 | 폐쇄공포증 김주현, 사장 그만두세요 135 | 교사 전입, 45세 이하만 오세요 138 | 정당 가입자, 정규직 전환 안 됩니다 141

4. 월급 받을 때 차별도 함께 받다

남자는 힘든 일 하나까 돈 더 준다 146 | 임시직은 호봉도 제한 149 | 시간강사는 경력 이 안 됩니다 151 | 학습지 교사,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네 154 | 계약직은 경력이 안 된다고요? 157 | 방위병은 군인이 아닌가? 160 | 3·1절에 쉬었으니 퇴직금은 없습니다 163 | 산전후휴가에도 성과상여금 주세요 166 | 같은 일에도 월급은 다른 배달부들 168 | 영어, 미국 국적 한국인은 못하나 171



5. 차별이 직장에서 날 내쫓다

도우미는 20대 여성만 할 수 있어요? 176 | 과산신청 했다고 쫓아내는 직장 178 | 별정 직은 정년도 먼저 챙겨드립니다 180 | 일 잘해도 임신하면 재계약 없다 182 | 결혼하면 일하기 어렵지 않나? 184 | 재임용, 외국인 교수는 NO 187 | 50세 이상 청소원은 부담스러워해요 190 | 나이 많으면 자원봉사도 못 한다 192 | 65세 넘은 경비원은 모두 무능합니다 194 | 맥가이버 통장도 두 손 든 나이 제한 197 | 관광해설사, 나이 많으면 안 됩니다 200

6. 경제생활하며 차별을 사다

살림하는 남자의 신용 204 | 내 은행보안카드 좀 봐주세요 207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없나요? 210 | 외국인은 신용보증 안 돼요 213 | 가족 없으면 매점도 운영 못 한다 216 | 남자의 피부도 소중하다 219 | 경력 인정 못 받는 운전의 달인 222

7. 시설 이용, 차별이 막다

미혼은 전원주택 못 짓습니다 226 | 사회보험이 증명할 수 없는 것 229 | 마을버스엔 장애인이 타지 않는다 232 | 일하는 엄마도 밥 짓기 힘들다 235 | 맘 편히 볼일 좀 봅시다 238 | 투표소에 사전 답사 가는 부부 241

8. 사회가 나를 차별하다

실제 양육, 서류로만 확인할 수 없는 이유 246 | 장애인은 되도록 운전하지 마세요 249 | 동성애자, 그들도 존재한다 252 | 32세 넘으면 못 가는 유학 255 | 세입자 주거이전비, 학생은 제외 258 | 전과자도 엄마랍니다 261 | 국가기술자격, 4년대졸 이상만 드립니다 264 | 원격대학 졸업생은 대졸자가 아니다 267 | 이혼한 형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 270 | 국방의 의무, 대학생은 봐드립니다 273 | 누가 동래학춤을 남성무라 했나 276 | 너무 잘해서 대회 참가 금지 279 | 학생 아닌 청소년은 국악도 못 하나 282 | 나는 살색 해도 너는 살구색 해라 285

글쓴이 소개 285



1. 학교에서 차별도 배우다

무릇 배움은 사람의 권리를 복돋우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배움의 현장에도 차별은 있다.
남녀를 구분해 번호 매기는 교실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반장 자격도 없지만,
공부만 잘하면 분위기 좋은 정독실에서 공부하며, 우등반에서 특별대우도 받는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생 장학금은 학벌 따라 지원된다.
정규과정 밖의 교육 현장도 다르지 않다.
외국인은 거절하는 직업재활교육, 한센인은 배제하는 정보화 교육까지.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다.
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임을.

번호가 아니라 배려를 가르쳐주세요



“엄마, 나 전학 갈 거야!”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실내화 주머니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소리를 질러댔다.

“여자 키 번호 12번이 나한테 꼬맹이라고 자꾸 놀려. 오늘은 키 번호 4번이 뒤에 서면 안 된다며 갑자기 확 밀어서 앞에 친구까지 다 넘어졌다고. 방학 동안 내가 키 번호 8번보다 커져서 뒤로 간 건데.”

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아들 녀석을 키 큰 친구가 놀린 모양이다. 학기 초에 정한 키 번호는 아이들의 성장차를 고려하지 않고 1년 동

안 유지되며,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키 번호가 체육시간이나 줄지어 서기, 자리 배정 등에 유용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키 작은 아이 엄마로서 속이 상한다.

학부모 모임에 나가 ‘열등감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게 하는 키 번호가 왜 필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더니 여학생 엄마가 말을 막았다.

“키 번호보다 출석 번호가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출석 번호는 1번부터 시작되고, 여자애들은 51번부터 시작되는 것이 더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물랐다. 키 번호를 ‘남자 1번 여자 1번’으로 부여하듯 출석 번호도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란다. “여자 1번” “여자 2번”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출석부의 여학생 번호는 51번부터 시작된다. 한 반에 30명 안팎인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번호가 41번이나 51번부터 시작되는 것은 학생들을 구별해 관리하는 게 행정상 편리하고 체육시간 등에 남녀를 구분해 수업을 진행하기에 원만하기 때문이란다. 또한 오랜 시간 그래왔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관행상 남녀를 분리해 출석 관리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었다.

사내아이만 둘을 키우는 나는 9번이나 10번쯤인 아이들의 출석 번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여학생 엄마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건 엄연히 남녀 차별이에요. 남학생 번호가 앞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거나 체력검사같이 ‘번호순’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남자애들이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요. 졸업 앨범도 번

호순으로 해서 남자애들 이름과 사진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아이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차별적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도 학교에서 말이예요.”

이렇듯 남녀를 구분해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호주나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출석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름이 있는데 왜 번호가 따로 필요하느냐’고 반문한다.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에게 “번호가 없으면 학교생활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혀”란다. 체육시간이나 자리 배치, 줄을 짓거나 발표할 때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키나 능력 등 상황에 맞춰 알아서 정렬한다. 물론 호주에도 출석부는 있으나 아이들의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적혀 있을 뿐이다.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개들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잖아. 학교에서는 번호가 아니라 배려를 가르치란 말이야. 배려를!”

개그맨 목소리를 흉내 내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평소 편리와 관행을 앞세워 아이들에게 악습을 답습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됐다. **유수정**

80점 이하는 반장 자격 없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반장은 성적 1, 2등이 아니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였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반장, 부반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올해 초등 6학년인 우리 아이 반 반장은 결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다. 빨간색 물감을 코에 찍어 바르고 나와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던 아이가 반장이 되었다. 공부는 좀 못하지만 유머감각이 있어서 친구들을 잘 웃기는 아이가 반장이 된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 김연아, 박지성, 소녀시대, 유재석, 박태환... 다 헤아리려고 해도 열 손가락이 부족하다. 그러니 반장도 굳이 공부 잘하는 ‘범생이’만 뽑아야 한다는 생각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얼마 전 여전히 낡은 잣대로 아이들을 숨 막히게 하는 학교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의 아이는 서울시의 한 여자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며칠씩 기운이 없어 이유를 물으니, 그 대답이 기가 막혔다. 자신은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뛰어난 자신이 학급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김씨는 부모로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왜 80점 이하면 반장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머리를 맴돌았다.

김씨는 학교 측에 문의했고, 학교 측에서는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에 '학급회장의 자격은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또한 이 기준은 2005년 학교 평가 및 2006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중 '학급회장 선출에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측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는 듯싶지만,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면 학교의 주장에 허점이 드러난다. 우선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이 큰 틀이었다. 그런데 학업 성적 80점이 되지 않는 학생이 이와 같은 품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니, 학급 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은 이 같은 규정에 반대가 70%였음에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사실 김씨도 그까짓 반장 우리 아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교 측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학교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 같다. 귀찮기도 하거니와 내 아이가 선생님에게 밋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김씨에게 박수를 보낸다. **추현숙**

시험이 끝난 후, 아이들은 분류된다

큰딸이 중학생이 되어 첫 중간고사를 치른 후의 일이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영어와 수학 과목은 상, 중상, 중하, 하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맞춤 수업을 했다. 딸은 상반이 되었고 그걸 내게 알리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기쁨은 순간이었다. 다음 기말시험을 앞두고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딸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엄마, 우리 학교는 수학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대. 수학 성적이 확 떨어져도 놀라지 마.”

알았다고 했는데도 틈만 나면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변명부터 하려 들었다.

“나같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성적이 잘 안 나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예감한 대로 2학기 들어 딸아이는 중상반으로 내려갔다. 그 사실을 나에게 통보하며 딸이 말했다.

“차라리 잘됐어. 상급반에서는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었어. 상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계속 불안했고. 지금이 내 수준

에 딱 맞아.”

딸의 얼굴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딸은 다시는 상반이 되지 못했다.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된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상반으로 가보라”고 권했다. 편안하던 아이 얼굴이 굳어졌다.

“짜증나.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만날 걱정해. 하반으로 내려갈까봐. 하반에는 꼭 그런 애들만 가거든.”

“그런 애들이라니?”

“있잖아. 선생님한테 만날 혼나는 애들.”

성적에 따라 아이들을 분류하고 나누는 일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두어 해 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면서 성적우수자만 입실할 수 있는 정독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고등학교장은 쾌적하게 잘 꾸며놓은 정독실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과밀학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학교 경쟁력이 향상될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의고사 시험 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다양한 잠재 능력을 가졌지만 당장은 그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정독실에 입실해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학교 경쟁력이 향상될 거라는 학교장의 주장도 근거가 빈약했다. 전체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학생은 열패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학교는 당장 드러난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기보다 그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독실 입실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정독실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학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나는 걱정이 많아진다. 아이들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 혹은 ‘나는 성적이 좋으니까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할까봐. 어른이 된 후, 내가 혹은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라고 생각할까봐. **김성혜**

우수 학생만 따로 모이세요

전화를 받는 시누이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다.

“2학년부터는 성적순으로 반 편성을 하거든. 그런데 저 녀석이 이번 기말고사를 죽 썩었다잖아. 어휴! 열반으로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동네에 소문 다 날 텐데...”

시누이가 사는 곳은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인 지역이다. 그 때문에 조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시누이는 스트레스에 무척 시달렸다. 교복만 보고도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공부는 좀 하는지 평가하는 탓에 이른바 명문고에 조카를 진학시키는 게 당시로서는 시누이의 지상 최대 과제였다.

성적을 기준으로 반 편성을 하는 곳은 조카의 학교만이 아닌 모양이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있는 10개 학교도 반을 편성하면서 성적우수자반을 별도로 만들었다. 해당 학교들은 비평준화 특성상 같은 학년에서도 학업성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반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수준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얻게 해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획일화된 학습 진도로 인한 소외감과 학습 불만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우수반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문제집과 보충수업 등을 통해 열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 대부분이 우열반 편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열패감 등을 가지고 있었고, 우수반에 포함된 학생들도 열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에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놓았는데, 해당 학교들은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열등감과 배제감 등의 정신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고, 전인격적 발달을 방해받을 가능성 또한 높았다.

해당 학교의 주장처럼 획일적인 학습 환경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했다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취향에 맞춰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성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격 형성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아이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또 그 상처가 평생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이연희**

퇴학생이 잃은 건 학습받을 권리

우리 사회에서 퇴학은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주홍글씨는 어디를 가나 평생 따라다닌다. 취업할 때도,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증받아야 한다. 그런 만큼 학교에서 퇴학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김군은 해사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발 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했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해 김군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학교 측이 아직 10대인 아들에게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고 퇴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의 행위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퇴학 처분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

하지만 해사고등학교는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결정을 하기 전에 담임교사가 김군의 아버지를 면담해 김군의 행동이 학생선도 규정상 퇴학에 해당함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퇴학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도 5차에 걸쳐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교사 등이 김군의 아버지와

면담했다고 했다.

해사고등학교는 해기사를 양성·교육하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교복, 정모 등을 비롯해 일체의 학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학교다. 그러므로 해군사관 제복에 준해 복장과 두발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군은 ‘귀가 시 정모를 운동장에 던져두고 가자’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1, 2학년 학급 전체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장차 엄격한 선박 생활을 해야 하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육 목표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김군이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퇴학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일면 이해가 가면서도, 아직 어린 10대의 청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퇴학은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이다. 따라서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그럼에도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아무 준비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질 김군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학교는 퇴학 처분 이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김군이나 그 아버지에게 퇴학 결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학생이 두발 자유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퇴학 처리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김군이 가진 학습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다. 따라서 김군이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 측은 규칙을 어긴 학생을 내쫓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좋겠다. 학교 입장에서는 단지 한 명의 학생이겠지만, 김군의 입장에서는 학습받을 권리를 통째로 잃어버린 다는 사실을. 그리고 김군의 인생에 대해서 말이다. **추현숙**

학생회장 후보, 학생부장이 골라드립니다

기성세대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밖에서 놀리지도 않고 사교육으로 푹푹 묶어서 잘 길들여 키운다. 그렇게 길들여놓고서는 아이들이 조금 크면 “요즘 아이들은 약하고 패기가 없다”고 비난한다. 그렇게 키운 게 누군데 다 까먹은 것이다.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촛불시위의 힘은 놀라웠다. 촛불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 작은 촛불이 세상에 큰 힘이 되었다. 촛불은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하는 평화적인 무기라서 더 감동스러웠다. 기성세대들은 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어른들은 깜짝 놀라서,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군은 그 촛불을 든 학생이었다. 김군은 2009년 7월에 실시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부장교사의 추천이 필요한데, 부장교사는 김군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



부했다.

부장교사는 김군이 2008년에 있었던 교육자율화 조치 반대집회 및 2009년 5월 명동에서 열린 대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점도 꼼꼼히 지적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장교사가 보기에 그는 문제 학생이었다. 학생부장은 김군이 2008년 10월경에 학교후문을 개방하라며 항의한 점, 교칙개정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입시지옥' '반란 불순세력' 등과 같은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2009년 5월 학교 급식실 영양사에게 학교 측의 지시인 양 수년치의 급식 관련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들어 김군이 학생회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생의 잘못을 꼼꼼히 따지는 부장교사처럼 그 판단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런 이유가 타당할까 싶다. 김군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과 후였고,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 평화적 시위였다. 당시 서울시 교육감조차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가에

다른 안전사고예방 등에 대한 공문만을 하달했을 뿐 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여를 금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런 만큼 김군의 촛불집회 참여는 학생회장 후보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보인다.

또한 법에 의해 청소년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김군이 교칙 개정 활동을 한 것은 교칙 내용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후문 개방을 요구한 것은 학생회 간부로서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자 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밖에 김군은 반란 등의 표현을 한 일도 없었다고 한다. 급식 담당 영양사에게는 식단표에 급식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학교 지시에 의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만약 김군에게 학생회장 입후보자로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 정말로 있었다면 그 평가는 부장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장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우선 교사가 먼저 후보를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장교사는 슬프게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가르친 아이들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촛불을 든 아이도, 촛불을 들지 않은 아이도 말이다. **추현숙**

임신한 여고생에게 오직 자퇴뿐

“저 임신했어요.”

열여섯 살의 당돌한 딸은 부모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고, 그 아이를 입양보낼 것이며, 입양 보낼 양부모까지 정했다고 말한다. 부모는 놀라면서도 딸의 결정을 지지하고 딸을 보듬어준다.

몇 해 전 본 영화 <주노>는 임신한 여고생의 이야기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이야기다. 열여섯 살 주노는 남자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 아기를 주체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 갈 만큼 당당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한다. 현실적이지 않은 판타지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이 영화처럼 10대가 임신하는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흘러가는 방향은 영화와는 사뭇 다르다.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 양은 양가의 허락을 받아 남자 친구와 교제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그만 졸업도 하기 전에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다. 둘은 아직

학생 신분이었지만 기특하게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한다. 그런데 김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김양이 자퇴하지 않으면 남자 친구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며 자퇴서를 내밀었다. 김양은 어쩔 수 없이 자퇴하게 되었다.

김양의 어머니는 할 수 없이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노했다. 어머니는 딸의 인생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만큼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은 단호했다. 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행동이고 풍기문란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또한 학교 측은 부모와 학생이 합의해 자퇴를 한 것일 뿐이라고 교묘히 말을 바꿨다. 올해는 복교가 불가능하며, 원할 경우 내년에 심의를 거쳐 복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자 친구의 형사고발에 대해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학생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연히 임신이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학교 측 주장일 뿐이다. 불미스럽고 학교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고 한 학교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성 교제 및 임신 행위로 학교의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한 학생에게 자퇴를 종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김양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자퇴를 결정한 것은 김양의 학습권

을 침해한 것이다. 생명도 지키면서 자신의 공부도 놓지 않겠다는 기
특한 결정을 한 학생을 학교가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주노>라는 영화를 찍는다면? 주노는 학교에서 퇴학
당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회
고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 **추현숙**

B형 간염 편견이 막은 기숙사 입사

우리 집은 좀 지저분하다. 매일, 매순간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쓰
지 않는 한 아침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도 저녁이 되면 청소하기
전과 똑같아진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대충 치우며 산다. 사실 텔레
비전에서 세균을 100% 박멸해준다는 세제 광고를 볼 때면 마음이 좀
불편했다. “적당히 지저분해야 건강하다”고 말할 때마다 남편은 자신
을 지나치게 합리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난 ‘균’보다 ‘100% 박멸’이라
는 말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다 없
애버려야 한다는 폭력적인 모습이 보여서다. 이러한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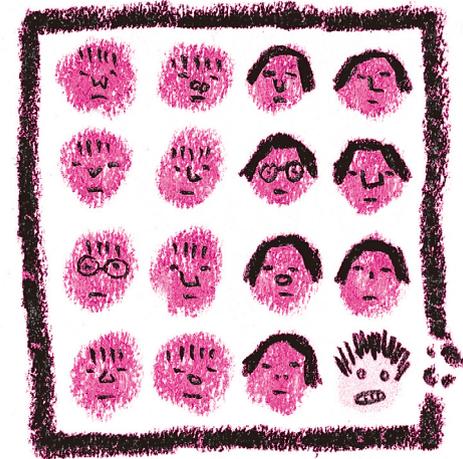
한 고등학생이 입학을 바라던 고등학교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만
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거부당했다.
그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4인 1실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에 감염될 확
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B
형 간염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B형 간염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전파되지 않는다. B형 간염이 주로 전파되는 경로는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 약물주사 사용자, 성적 접촉 등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생활에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특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타인을 입으로 무는 성향,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할 의학적·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학생을 직접 진단한 전문의 두 명도 학생의 지금 건강 상태가 다른 학생들의 감염을 우려해 기숙사에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학교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학교는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학생의 병력을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관 운영 규정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B형 간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에서 제외된 학생을 보면서 최근에 본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피해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바람에 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였다. 가난

한 집 아이들에 대한 편견, 거기에서 비롯된 자식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낳은 해프닝이다. 다시 가정의 환경 문제로 돌아가보면 100% 세균 박멸된 것 같은 안전한 환경은 생각만큼 그리 안전하지 않다. 너무 깨끗해서 신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도 손상된다는 위생 가설이 이를 증명한다. [_김상혜](#)



더 많은 남자 미용사를 만나고 싶다

우리 동네에는 정말 인기 있는 미용실이 있다.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깎고 볶아준다. 그런데 그 미용실이 더 돋보이는 이유는 머리 자르려고 온 사람들의 말을 너무도 잘 경청하는 훈남 미용사들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개성 넘치는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제가 반곱슬이라서 그러는데요. 술을 쳐주시고, 길이는 너무 짧지 않게 잘라주세요.”

남자 미용사들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어찌나 친절히 들어주는지 정말 인기가 짱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훈남 미용사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미용실에서 달 지난 잡지를 몰아줄 뿐 아니라 어르신들 머리도 공짜로 잘라준다. 정말 “미용사 오빠들 최고!” 란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런 훈남 미용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접을 만한 일이 발생했다.

윤모 군은 서울의 한 미용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지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학생만을 선발한다는 학교의 새로운 방침으로 지

원조차 할 수 없었다. 사실 이 미용고등학교는 이전 해까지 남학생을 선발해왔고, 6개월 전까지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자 약간 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공지해왔다. 그런데 같은 해 3개월여 전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서 갑자기 여학생만을 선발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를 본 윤군은 이 미용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그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 미용고등학교가 남학생을 선발하지 않게 된 이유는 남학생들 중 상당수가 진로나 적성에 대한 갈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데 있다. 당연히 전체적인 학업 분위기도 안 좋아졌고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했단다. 그래서 학교 측은 다수 학생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여학생만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뜻 이해는 가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윤군처럼 미용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온 남자학생들에게 피해가 갔다. 사실 교육기관이 갖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학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미용업계에 남성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게 현실임에도 미용고등학교에서 교육 대상을 여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이다.

또한 다른 다수의 미용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을 뽑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남학생의 학교생활 지도가 어렵다는 것은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또한 학교 운영에서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성별로 차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사람들은 더 많은 남자 미용사, 더 많은 여자 군인, 더 많은 남자 요리사, 더 많은 여자 축구선수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야 세상이 재밌고 멋있어 진다. **추현숙**

검정고시 출신, 수시모집 안 돼

가수 보아, 가수 김장훈,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장승수, 전 대통령 노무현...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검정고시 출신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검정고시는 그들에게 약점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정신적 강인함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검정고시를 택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집이 가난해서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류 사회는 뭔가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그들을 뼈뺏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요즘은 검정고시를 보는 이유가 다양해졌다. 학교에 잘 다니던 우수한 학생도 입시 경쟁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가치관으로 학교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검정고시 문제가 차별 감수성의 시험대에 오른 일이 있다. **열여섯 살인 이모 씨 등은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 6대 대학에 지원하려 했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 수시모집은 각 대학이 대학의 교육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만큼 전형 대상과 자격 기준 및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전형에 따라 내신 성적이 필요한데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정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의 입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도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시 지원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각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과의 합리적인 비교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이는 대학이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더 많은 방법을 연구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내 아이도 중학교에 간다. 중학교는 공부 스트레스도 심하고, 왕따나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중학교 이후부터는 진짜 경쟁 사회에 돌입한다는 생각에 아이가 측은하기도 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볼래요”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면 아이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

까. 모든 부모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아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검정고시 자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한번 넘어졌어도, 공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추현숙**

비행사는 모두 군 조종사가 되라

페이스북이 왜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는가?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적록 색약이기 때문이라. 그는 “붉은색과 푸른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파란색을 좋아하고 붉은색보다는 잘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명랑하게 표현했다.

그는 신체적 조건이 자신의 꿈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대중은 이렇게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 때문에 꿈의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느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들은 대학에 입학 서류조차 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조종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항공운항학과 입학 자격에 교정시력과 별개로 나안시력 0.4 내지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들은 불행하게도 나안시력이 0.4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현행 항공법 시행

규칙에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1종 항공면허 발급 요건은 그보다 완화된 수준이었다. ‘안경을 통한 교정시력이 1.0 이상이면서 나안시력이 0.1 이상일 것’ 또는 ‘나안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정밀 안과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이라 정하고 있다. 그러니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지망생들은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두 대학의 입장은 달랐다. 항공운항학과는 높은 교육 비용을 투입해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학과라는 것이다. 입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장래 조종사로 진출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항공운항학과 졸업생의 대다수는 군 조종사로 복무한 후 민간 항공회사에 채용되는데 군 조종 장교의 시력 기준이 나안시력 0.5 이상이기 때문에 입학생 선발에 이런 제한을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졸업 후 민간 항공회사에 직접 채용되는 경우에도 조종 장교에 준하는 나안시력을 갖추지 않으면 채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입학 자격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학교 측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나 항공법이 정한 항공신체검사 기준에서 교정시력 이외에 나안시력에 대한 절대적인 하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항공운항학과 졸업자가 군 조종장교 경력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간 항공회사에 직접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은 애써 축소했다. 게다가 국내 주요 항공회사 역시 조종사 채용 시 지원 자격에 항공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 이상의 시력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항공운항학과 입학 자격을 법령 규정 및 항공회사의

채용 기준보다 높게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꿈을 가진 이들의 지원 자체를 막는 것은 신체적인 결함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더 이상 신체적 조건으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은 주변의 다른 직업인도 감동시킨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신체적 약점을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바란다. **추현숙**

장애인이 박사과정 해내겠어요?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장애가 심해 저희 학교 특수학급에도 진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지요.”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장애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했던 한 어머니에게 한 말이다. 만약에 이 어머니가 말주변이 없었더라면 장애 아이를 둔 죄인이라 자책하며 눈물을 머금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아이를 입학시켜야겠다고 버텼다. 이에 교장은 “그러면 우리 학교 특수학급에 진학을 시켜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마저 완강히 거부했다.

“분명 이 아이의 입학을 거부하시면 모르긴 해도 법에 저촉될 것입니다. 저는 교장선생님이 저와 법정에서 서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애 아동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결국 교장은 입학을 허가했다. 이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어머니 덕에 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일반 학급에서

졸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분명 다른 아이들보단 능력이 모든 면에서 달리긴 달렸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난 열등감보다는 그 무리에 섞여 동등한 위치에서 나는 다르지 않다는 걸 배우며 성장했다. 또한 아이들도 처음에는 나를 멀리하고 천대했지만, 나중에는 장애인에 대해 낮설어하지 않고 오히려 비장애인처럼 대하며 배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요즘엔 논의되는 장애인 통합 교육의 이점이 그 옛날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태도가 없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요즘엔 상황이 더 좋아져 학교 측에 장애를 갖고 있어도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 장애인 보조인이 없는 경우 등. 장애인 본인이 원한다면 차별 없는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모양이다. 어느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어느 대학 박사과정 2008년도 입학 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대학에선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려면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찾아다니며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라고 의견을 모아 불합격으로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선입관에 불과하다. 설령 신체적인 장애가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인 등의 활용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추세인 건 부정할 수 없는 대세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선입관을 갖고 바라본다면, 장애인은 모두 무능하다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있다. 장애를 갖고 있기에 무능할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지 말아야 할 근거 중 하나다. **공병조**

장학금, 학벌 따라 드립니다

“애들은 공부 잘해요?”

오랜만에 시댁에서 만난 시동생이 아이들의 근황을 물었다. 이른바 사립 명문대학 출신에 진보적인 언론사 기자인 시동생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묻는 것인지 당황스러워서 되물었다.

“네? 뭐라고요?”

시동생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형수님, 우리 신문사 직원 대다수가 말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연줄이 다 힘이 돼요. 학벌이 다가 아니라고, 출신 대학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별짓 다해요.”

시동생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학벌주의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장학회에서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도 대학 간 차등을 두었

다. 이 장학회는 대학 성적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A군과 B군으로 대학을 분류한 후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의 평가 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배점했다. 그 장학회는 장학생 변별 기준으로 어느 일간지의 대학 평가 팀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대학 평가결과를 도입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간 격차를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장학생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주어진 가산점이 장학생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A군 대학의 학생들은 가산점의 영향으로 총득점이 높아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반면 B군과 그 외 대학 학생들은 학교 성적, 거주 기간, 주거 상태에서 점수가 높았는데도 가산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총득점에서 뒤져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했다. 또 최종 선발된 장학생 가운데는 학교군 가산점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일반 장학금이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 대학 간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학교군에 의한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배점한 결과, 어느 대학 학생이냐가 장학생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이라는 동일한 수준의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대학교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학교를 차등 분류하고 그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이 일상

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난다면 학벌 위주의 사회는 더욱 공고해진다. 최근엔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학 간 서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자식들에게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학력과 학벌이 신분이고 곧 자본이다. 차별받고 억울해하지 않으려면 일류대에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다. **_김성혜**

병설 로또는 교직원 자녀만 오세요

얼마 전 나보다 늦게 결혼해 아이를 낳은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대뜸 친구가 자랑부터 했다.

“야, 나 로또 당첨됐다~”

“뭐, 정말이야?”

“응. 병설 로또!”

“우와, 축하해.”

두 번의 유산 끝에 낳은 귀한 아기가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게다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으니 정말 로또가 맞다!

아직 결혼 안 한 처자들은 병설 유치원 입학에 왜 로또 당첨이라 하는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보낼 만한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안다. 병설 유치원은 한 달에 4만~6만원 정도만 받고도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빠듯한 살림에 한 달에 30만~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일반 유치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서민

들의 현실이고 보면 그야말로 병설 유치원은 로또 중에서도 로또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전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야기는 유치원 갈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모 씨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집 근처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입학 원서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병설 로또에 입학 원서조차 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측 설명은 이랬다. **이 병설 유치원은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는 데 있어 시교육청에 소속된 교직원 자녀에게 입학 자격 1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직원 자녀만으로 정원이 다 채워져 다른 아이들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유치원은 설립 인가에 교직원 자녀 어린이방이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치원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주장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은 아동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 내 보육시설로 인정받아 모집 대상을 직원 자녀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으로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는 다르다. 따라서 유아 교육에서 벗어나 직업 활동에 전념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은 교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이 유치원이 원아 모집 시 교직원 자녀에게 1순위를 부여해 우대하는 것은 이씨와 같은 교직원이 아닌 부모의 아동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유치원의 문호

를 개방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씨는 유치원 측의 주장을 듣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왜 애초에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고 밝히지 않고 병설 유치원이라고만 알렸는지 의문이 든다. 사교육 천국 대한민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야 하는 부모들은 불쌍하다. 제발 그 사교육의 진입로인 유치원에서부터 차별로 서민들 울리는 억울한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추현숙**

직업재활, 외국인은 사절합니다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듯, 객지 생활 하다보면 서러운 순간이 참 많다. 특히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무시와 차별에 제대로 항의 조차 할 수 없을 땐 정말 짝이 그립다. 대학 시절 일본에 있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다. 한 번에 20개씩 들어야 하는 사기그릇이나 고기 굽는 철판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일을 마치고 자려고 누우면 손목이 아파서 엄마가 보고 싶었다. 매니저에게 업무 조정을 부탁했다가 위로는커녕 “잔말 말고 일하든지 아니면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만 들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을 봐 주면서 남일 같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기억 때문이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청춘을 포기한 채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서 적게 받고 오래 일했던 그들은, 다쳐서 장애를 갖는 일은 다반사고, 손가락이나 팔이 잘렸다거나 다리나 허리를 못쓰게 되어 걷기 조차 힘든 경우도 많았다. 혹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할까봐, 또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도

무수히 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많이 좋아졌다. 이주노동자도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보장받고 업무상 재해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로 인정받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로 여건에 대한 법과 제도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 반해, 산재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직업재활훈련만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를 예외로 하고 있었다. 다친 것은 치료해주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지는 않는단다.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와 5년간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2007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재활훈련을 신청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국내 체류 목적이 기술 연수인데 재해를 입었다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면 불법체류자의 국내 고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네 중소기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여전히 그들이 없다면 생산을 멈춰야 하는 현장도 많다. 외국인이기 이전에 우리 산업을 위해 일했던 근로자다. 그런 그들이 내 나라 현장에서 다친 것이라면 다시 산업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것이 우리네 정서인 인지상정이다. 아직도 다른 선진국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으로 뛰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직업재활훈련 또한 당연히 그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돼 그 수혜 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먼저 제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원칙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손목이 아프지 않다. 안타깝게도 그때 일본에서 열심히 익혔던 일본어도 거의 잊어 버렸다. 그러나 그때 들었던 모멸적인 말만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누군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수정**

한센인은 정보화 교육 받을 수 없어요

봉사활동 기관에 근무할 적에 중고생들과 함께 소록도를 찾은 적이 있다. 그때는 다리가 놓이기 전이었는데, 섬에 들어가는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소풍 나온 것처럼 마냥 설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배가 섬에 도착하자 아이들 얼굴엔 일제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센병 환자들이 기거하는 병사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할 일을 나눠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요강을 씻어달라고 하셨다. 요강을 씻게 된 두 아이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한센병 환자를 처음 대하기에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따라 화장실로 갔다. 요강을 들고 어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건네받아 맨손으로 수세미질을 했다. 나라고 괜찮기만 했겠는가. 아이들 앞이라 책임감 때문에 내색하지 않을 뿐이었다. 요강을 씻어 아이들에게 건네자 굳어 있던 아이들 표정이 한껏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2박3일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돌아오는 날, 두 아이 중 한 명이 살며시 그런 말을 했다. 요강을 씻는 내 모습을 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때로부터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선입관이 존재하고 있다. 한센 병력이 있는 김씨만 해도 그렇다. 김씨는 활동성 임상증후군이 없어지고 증상 진행이 멈춘 한센병력자인데, 몇 년 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을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을 2회 정도 진행한 후 김씨가 한센병력자라는 것을 알게 된 강사는 일방적으로 교육을 거부했다.

일반인의 95% 이상이 한센병에 대한 자연항체를 가지고 있어 한센병 환자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활동성 임상증후군을 가진 한센병 환자는 치료제 복용을 통해 나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하고 약물치료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면역 기능 상태인 일반인에게 접촉을 통해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과 혐오감을 가지고 한센병 환자와 한센병력자를 정책적으로 격리해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규정을 통해 한센병력자를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 대상 사업에 한센병력자를 비롯한 병력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도 강사들로 하여금 병력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김씨는 정

보화 교육 기회를 잃었다.

살다보면 제대로 알지 못해 선입관부터 갖는 일이 많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기 전에 제대로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연희**



2. 취업하려다 차별을 만나다

취업대란 시대, 직장 찾아 나섰는데 차별이 먼저 면접한다.
 B형 간염, AIDS, 색각 이상자에겐 그 질병의 정체보다 편견이 더 무섭다.
 성차별도 여전하다. 남성은 배제되는 간호사,
 여성은 제외되는 위생감시원, 출산 여성을 쫓아내는 직장,
 이혼녀를 거부하는 특전사 등 참 다양하다.
 또다른 일할 기회인 자원봉사자도, 통·이장도,
 관광해설사도 나이가 많으면 쫓겨난다.

취업의 문 앞에 서면, 사람을 뽑으려 하는 건지,
 버리려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사장님, 태권브이라도 뽑으시게요?

광고를 공부했다. 광고 카피에 매력을 느껴 덩석 광고 공부를 시작했던 나는 막상 광고계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는 솔직히 힘들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다 좋을 수는 없다는 진리,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광고 작업은 창조적이고, 재밌고, 가끔은 짜릿하기도 하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은 물론 감동이자 전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밤을 새우는 일도 잦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광고주를 욕하느라 밤에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폭음하는 날도 꽤 있었다. 그 결과 위장병을 달고 살았고, 장염은 매해 여름 나를 찾아오는 필수 예약 손님이었으며, 머리카락은 삼단처럼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빠져 달아나곤 했다. 한마디로 허약 체질이였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 감기는 시도 때도 없이 내 목을 공격했고, 장염은 여름이면 아이스라테 한 잔을 마시기만 해도 옮겨니 하며 내 장을 두드렸다. 하지만 감기에 걸려 허리가 끊어지게 기침을 한다고 회사 일이 줄어들지는 것도 아니었다. 장염으로 화장

실을 골백번 다녀온다고 해도 회사는 가야 했다. 능력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이지, 병이 있다고 회사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단지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 발휘의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런 병력 가운데 대표적인 게 B형 간염이다. 27세인 전씨 씨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다. 그는 군 제대 후 한 회사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서 2차 면접까지 합격했다. 그러나 추가 신체검사의 혈액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반응을 보인 전씨는 채용에서 탈락했다. 전씨가 응시한 지방 영업직은 업



무 강도가 세고 음주도 하게 되어, 전씨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씨의 상태는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었다. 전씨의 채용 건

강진단표에는 이미 진찰 소견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었다. 종합 소견엔 B형 간염 보유자로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이상 소견으로 간주하고 추가 검진을 요구했다.

결국 이 회사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전염성 또는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편견이 한 사람의 일터를 빼앗아버렸다.

대한간학회에서는 간 기능이 정상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코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간염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건강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어찌면 우리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닐까? 우리 모두 무쇠 팔 무쇠 다리를 가진 태권브이라면 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악당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설 것이다. 사람으로 살자!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말이다. **서미현**

인재를 놓치는 질병, 선입관



1994년에 개봉된 톰 행크스 주연의 <필라델피아>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어느 거대한 법률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내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AIDS)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요한 서류를 몰래 없애버린 뒤 그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해고했다. 해고도 당하고 무능하다는 불명예까지 얻은 주인공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승리해서 명예도 되찾는다는 줄거리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나는 AIDS도 눈병처럼 수건을 같이 쓰거나 밥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전염된다고 믿고 있었다. 당시에는

AIDS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영화는 흥행했고 많은 사람이 나처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영화 속 이야기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6년여 전 한 은행의 신입행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한씨는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까지 모두 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이 결정됐다고 믿고 있었다. **공채시험 응시생 모두가 받았던 신체검사에서 한씨의 간 기능이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면접까지 마친 후라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한씨의 **휴대전화로 보내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는 한씨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신검 결과 부적격 판정. 더 이상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더 큰 행운을 기원합니다.’

영화 속 경영진은 치밀한 음모를 꾸며 소위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했는데, 이 은행은 당당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간 기능과 업무 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한씨는 은행 측에 항의했고, 은행은 자사의 채용 기준인 사회성, 협동성, 회사 비전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에 한씨가 부합하지 않아서 탈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는 단순한 업무 착오였을 뿐 절대 신검 결과로 당락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였다. 최종합격자 발표 하루 전인 11일에 재검을 받은 한씨의 합격 여부만 유보했다가, 재검 결과가 나온 13일에 휴대전화 문자로 불합격 통보를 한 상황에서 단순한 업무 착오라는 은행 측의 설명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씨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전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채용 전 의무적 신체검사는 폐지되었다. 채용 여부는 신체적 조건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채용 전 신체검사는 당연한 절차처럼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 결과는 채용 여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지와 막연한 공포심이 낳은 선입관 때문에 진정한 인재를 놓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정말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원한다면, 신체조건이 채용 후 맡게 될 업무에 적합한지, 그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채용이 결정된 후에 검사하는 ‘배치 전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하겠다. **_이영화**

색각 이상자,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두 해 전 김모 씨는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했으나 응시도 못 해본 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약도 이외의 색각 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색각 이상'이란 몇몇 특정한 색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가리킨다.

경찰청은 교통신호 인식과 도주 차량의 판별이나 추적, 범인 검거 시 인상착의의 신속한 판별 등 경찰의 직무 수행에서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약도 색약자의 경우까지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해양경찰청도 대부분의 업무를 해상에서 수행하는 해양경찰이 항로표지, 등화, 형상물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으로 색각이 정상이거나 약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이런 이유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찰과 해양경찰은 조금 다른 채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산업의 판단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고, 영국은 색각이상자 중 완전 색맹만 채용하지 않으며, 특히 해양경찰은 세 나라 모두 실제 해상신호등 검사를 통해 지장이 없는 정도에서 채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모든 업무 분야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었다. 경찰 업무 중에는 색각 능력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업무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이나 운전 업무의 경우는, 일반 기업에서는 중등도 색각이상자도 관련 자격증이나 운전면허를 획득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색각이상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그만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다. 가수, 배우, 밴드 등 오디션의 종류도 다양하고 시청자의 반응도 뜨겁다. 평범한 도전자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금씩 꿈에 다가가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나는 도전자들이 아닌 심사위원들에게 종종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 어차피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냉정한 오디션이지만 그 기준을 부족한 점이 아닌, 재능과 가능성에 두는 자세 때문이다.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직원의 공개 채용은 인재를 찾는다는 점에서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 공개 채용에 지원하는 이들의

각오나 자세도 오디션에 임하는 도전자들의 그것과 같다. 그러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시각은 전혀 같지 않은 것 같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이 도전자 한 명 한 명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며 가능성을 끌어내려 할 때, 공개 채용의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단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아닐까? **_이영화**

간호사는 여성만? 먼저 능력을 보라

교육방송이 한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다. 4~5세 어린이를 모아놓고 젊은 남자가 아빠처럼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라고 물으면 당연히 남자라고 답한다. 그 후 그 남자가 엄마처럼 뽀글거리는 가발을 쓰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여자라고 답했다. 6세 이전까지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을뿐더러, 경우에 따라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차이를 모르는 거다. 그냥 인간이라는 것으로만 인지될 뿐, 남녀 성의 차이를 모른다. 6세가 지나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된다고 한다. 조금 놀랐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남녀의 차이를 알게 된 걸까?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하고, 남자는 거칠고, 여자는 세심하고, 사실 이런 겉보기 차이는 고정관념일지 모른다. 개인별로 들어가면 여자보다 더 예민하고 세심한 남자가 있고, 남자보다 씩씩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여자도 있다.

10년 전 어머니가 편찮으셨다. 투병하시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이른 새벽에도 손에 실을 쥐고 매듭짓기를 연습하며 통통 부은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외과 인턴들을 보았다. 남녀의 차이가 없이 함께 밤을 새우고도 환자들에게 웃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던 그들의 미소가 떠오르곤 한다.

여러 군데 찌르지 않고 한 방에 피를 뽑아 가던 남자 간호사. 예쁜 장한 미소로 환자들의 불편을 다 받아주던 여자 간호사, 환자를 직접 대하지는 않지만 지켜보면서 환자의 가족까지 다 아우르던 수간호사. 혈관을 찾지 못하던 약간 미숙한 간호사까지 - 병실에 있다보면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여자 간호사가 편하지만, 피 뽑는 게 미숙한 간호사보다 세심하고 능숙하게 채혈하는 남자 간호사를 더 선호하게 마련이다. 사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어쩌면 우리끼리 만들어놓은 굴레가 아닐까 싶다.

살면서 보이지 않은 굴레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 27세 남자인 정모 씨는 간호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의 한 기관에 간호사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로 채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업무 특성상 여성만을 채용할 것이므로 남성의 이력서는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씨는 간호사 자격을 가졌음에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이 기관은 문제가 불거지자 남성 간호사는 모집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유가 당시 종합검진 업무 이 외

의 두 개 업무에 이미 채용자가 결정된 상태였고, 위·대장 내시경과 자궁암 검진을 주로 하는 것이기에 여성 간호사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신체 노출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는 여성 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일면 타당했다. 그러나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 관련 업무는 전체 업무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 재배치나 간호사들의 부서 이동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남성 간호사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간호사라는 업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을 배제한 결과를 낳았다.

성별에 따라 맡아야 할 업무 특성이 뚜렷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어릴 때는 성별을 몰랐다가 자라면서 세상의 편견에 물들었는데, 이제 다시 편견들을 걸러내고 깨닫게 되었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남녀 차이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라는 걸 안다.

병원에서 만난, 세심한 손길로 피를 잘 뽑던 남자 간호사와 거칠고 투박하며 지저분한 남자 인턴들 틈에서도 말쑥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외과의가 되기 위해 열심이던 여자 인턴. 모두 자신들의 꿈을 제대로 이루어나가고 있겠지. 남녀를 떠나 우리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미현**

여성이 보건위생감시원 할 수 있겠어요?

‘곰 세 마리’라는 동요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아유 귀여워.”

제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때부터 이 동요를 애창해오던 조카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이모는 여자니까 날씬한 거야?”

나는 여자라는 조건과 날씬하다는 결론의 비논리적인 조합에는 상관없이, 100년 만에 들은 날씬하다는 칭찬에 일단 마음껏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막 남녀 차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아이에게는 동요 가사 한 대목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물론 조카는 날씬하다는 말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 채 가사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선입관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의미도 깨닫기 전에 머릿속에 박혀버린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으로.

이것은 조카가 네 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아무리 엉뚱한 말이라도 네 살짜리 아이가 하면 무조건 귀엽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

강씨는 2009년 대전의 한 구청에서 공고한 보건위생감시원 분야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진행된 면접시험에서 엉뚱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여성인데 보건위생감시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강씨는 네 살짜리 아이가 할 만한, 전혀 상관없는 조건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 질문이 황당하기만 했다.

구청은 지원자의 정신 자세, 의지력, 각오, 됨됨이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었을 뿐 성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강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세 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고, 당연하게도 강씨 외에는 아무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구청은 앞서 한 말과 모순되는 설명을 이어서 했다. 보건위생감시원은 현장 지도 단속 중 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업주들이 과격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폭력배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 상해를 입을 때도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내의 타 자치구도 모두 남성 공무원이 보건위생감시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 성격 및 특성상 남성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응시 대상자를 남성으로만 제한하지도, 성별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정해놓지도 않았지만 이미 채용 담당자들의 마음속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유능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명이었다.

이것은 남성 지배 직종에 여성의 진입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에 비해 위험 대응 능력이 낮다거나,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고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만

약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보건위생감시원의 필수 자격이라면, 해당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두고 성별에 관계없이 평가하면 될 일이었다.

어릴 때 그림을 그리면 그림 속의 나에게 꼭 치마를 입혔다. 평소 나는 거의 치마를 입지 않았는데도 그림을 그릴 때엔 반드시 치마 입은 나를 그렸다. 나뿐 아니라 여자는 모조리 치마를 입혀 그렸다. 교과서에 나오는 ‘영희’가 늘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렇게 사소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영화**

출산 후엔 직장 다시 못 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꼴찌라고 한다. 뉴스에서는 이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국가에 위기가 온다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를 빨리빨리 많이 많이 낳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뉴스의 호들갑을 모두 믿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을 보더라도 저출산 현상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나라의 미래를 낳아주세요’라는 정부의 구호를 듣고 애국심에 불타올라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불임 치료나 임신부 건강관리,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지원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미숙이나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는 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임신 때문에 직장을 잃은 적이 있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1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같은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 모집에 지원

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했다. 김씨가 출산을 약 2개월 앞둔 임신부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탈락했다는 사실보다도 면접에서 보건소장이 한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출산으로 임용받지 못할 상황이고, 보건소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원서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이번 채용에 원서를 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채용 직후 바로 출산 휴가를 줘야 하는 보건소의 부담을 안다면 본인이 알아서 원서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질책이 담겨 있었다. 다른 면접 위원들의 질문도 주로 출산 예정일과 출산 후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김씨는 항의했고 보건소장은 김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둘러댄 말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사실은 전문의를 채용하려는 보건소 내부 방침에 일반의 자격을 가진 김씨는 조건 미달이었고, 그동안 김씨로 인한 민원 발생도 많았고,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나 채용 공고 어디에서도 전문의만 채용하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씨가 근무한 12년 동안 특별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다거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도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면접위원들이 진정한과 오랫동안 근무해 잘 아는 사이라고는 하나 진정한에 대한 질문이 주로 출산일과 출산 후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고 근무 평정 요소와 관련된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진정한이 불합격 처리된 직후 보건소장을 면담했을 때에도 동일한 취지로 발언했던 점을 고려할 때, 김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에 임신과 출산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거나 주된 사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산을 앞둔 지원자를 채용하면 산전·후 휴가의 부담 등으로 일정 기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지 임신부 개인에게 떠넘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초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두고서 나라의 미래를 낳아달라고 호소하는 나라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영화**

이혼녀는 특전사 안 돼

‘여성은 아기를 낳을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말은 꽤나 여성을 인정하고 위하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말은 여성의 발목을 잡는 말로 더 자주 쓰이고 있다.

몇 년 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소개팅 상대에게 동거 경험을 알려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논쟁은, 한 여성이 아끼는 여자 후배를 남동생의 친구에게 소개했는데 그 후배가 과거에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사이트 회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철없다, 문란하다, 임신도 했었는지 모른다, 이혼 경험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다, 등등. 댓글의 대부분은 글을 올린 여성과 후배의 뻔뻔함을 질타하는 내용이었고 ‘아기를 낳을 몸인데 소중히 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나는 그 후배와 동거했던 남자도 어딘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비난을 받고 있을지 궁금했다. 모르긴 해도 여자만큼은 아닐 것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성=

아기 낳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의 가치를 출산과 육아에만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2006년에 특전사는 부서관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여성은 미혼에 한한다’는 제한을 두었다. 특전사 부서관 선발 후 200주의 양성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기혼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팀워크나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임신의 가능성이 기혼 여성에게만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 순진하게 느껴지지만, 아무튼 당시 독신이던 배모 씨는 공고를 보고 자신에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특전사 부서관 모집에 지원했다. 그러나 육군과 특전사는 배씨의 과거 이혼 경험을 문제 삼았고 이혼 여성은 기혼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배씨를 탈락시켰다. 배씨는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때문에 제한한다던 기혼자의 범주에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배우자도 없는 자신이 왜 들어야 하는지 황당하기만 했다.

사실 애초에 여성에게만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임신부에게는 무리한 양성교육이 있음을 알고서도 임신부가 모집에 응시할 가능성이 낮으니, 임신부가 양성교육을 받다가 사고를 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게다가 설사 미혼으로 부서관에 임용된다 하더라도 양성교육을 받은 후 결혼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래저래 미혼 여성만 임용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없었다.

근래 들어 군, 경찰 등 종전에 남성 집중 직무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양성 평등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는 몹시 반갑다. 특전사 모집에도 미혼 여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된 점도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다. 다만 그 모집 과정에서 남녀 간에 자격 요건을 달리할 경우에는 ‘여자=아기 낳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공식 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 뿐이다. **이영화**

비행기 승무원에게 숨어 있는 1인치

대학교 때 덴마크식 다이어트를 하던 과 친구가 있었다. 나는 진로를 광고 카피라이터로 정한 다음이었고, 친구들 중에는 항공사 입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다. 키는 이미 165cm가 넘었는데, 이 친구의 문제는 몸무게였다. 덴마크식 다이어트가 뭔지도 몰랐던 때, 그녀는 잡지에서 오려낸 식단을 가지고 다니며 승무원이 될 준비를 했다. 식빵 한 조각, 자몽,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 등의 식단을 2주 동안 착실하게 실천하면 대략 3~4kg이 빠진다고 했다. 물론 3~4kg 감량이 늘 한계였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를 원했지만 요요현상을 겪고 다시 덴마크식 다이어트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그 당시 나는 아예 응시조차 할 수 없을 내 신체 조건을 희화화해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곤 했다. 난 키가 작은 것은 물론이고 키가 해당 되더라도 바로 팔 길이가 문제였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키보다는 팔 길이가 중요하다고 했다. 바로 집간의 덮개를 닫을 수 있는 정도면 오케이라는 거였다.

나는 팔이 짧은 축에 속해 기성복의 소매도 줄여 입었다. 물론 키, 팔 길이를 떠나 얼굴이 ‘뺨’이었으니 말해 뭐하겠나 싶다.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불편한 진실은 지금이나 십수 년 전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생이 모여 앉아 키 크고 뚱뚱한 사람이 키 작고 날씬한 사람보다 기회가 있으니 조금 더 낮지 않느냐며 입방정을 떨곤 했다.

3~4년 전 국내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 채용 시 신장 162cm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들은 외국 항공사가 신장 157.5~160cm 또는 암리치(Arm Reach) 208~212cm 정도의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항공사의 채용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당시 국내 항공사에서는 객실 승무원은 일상적으로 적재함 개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적재함의 높이가 기종에 따라 200~214cm 이기에 신장 162cm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신장 조건이라고 밝혔다.

적재함의 높이가 대개 200cm 이상인 항공기 내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실승무원 채용 시 신장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적재함 높이 때문에 승무원 채용 시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면 승무원의 신장 조건이 아니라 팔 길이로 따지는 게 더 마땅하다. 키와 팔 길이가 늘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외국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스텐디스들이 우리나라 스텐디스

들과 달라 희한하다고 여긴 적이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승무원들은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커서 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가끔 외국 항공기의 승무원을 보면 나이도 많고, 약간 살집도 있고, 키가 훤히 칠하지 않은 여성도 눈에 띈다.

그러나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아이가 울거나 하는 작은 문제들에도 노련하게 대응하는 승무원들을 보기도 했다. 단 몇 cm의 키 때문에 제한을 둔다는 건 어찌면 정말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멋진 서비스를 나 같은 고객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지 생각해본다. **서미현**

장애, 의식하되 의식하지 않기

몸이 불편한 3급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이 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 어느 기업의 의류매장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매장에 문의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이 여성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능력 여하는 아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후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 측에서는 의류매장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를 가진 또 다른 여성은 홍보대행사에 취직해 첫 출근을 했으나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왼손 손가락 일부가 손실되고 심한 화상 자국이 있는 장애가 있다는 걸 회사 측에서 알게 된 직후였다.** 홍보회사인 자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패션을 선도하는 의류매장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보기에 좋지 않다거나, 홍보 도우미를 해야 하는데 장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는 편견에서다. 아마도 여기에는 장애는 보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평등의 시선이 아쉬



운 대목이다

이런 사례를 접하다보니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휠체어를 타는 어떤 이가 미국에 잠시 가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외국 땅이기도 해서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과는 달리 공항 스태프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 좀 의아했었던다. 더 놀라운 상황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일행과 일을 마친 후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갔는데, 수많은 인파 속 장애인의 수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아서 한 번 놀라고,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인의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장애인을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닌, 장애가 전혀 문제될 게 없으므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어찌 보면 장애인을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분명 다르게 비친다. 다르다는 것을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 것과, 장애가 있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자연스러운 관념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취업이나 활동에 제약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 머리에 각인돼 있었으리라. 나는 이런 관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서로 다른 이 세 이야기에서 쉽게 알 수 있었다.

요즘 주변에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사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것은 맞다. 그러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진 것에 멈추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그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 장애인이 일하는 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멋진 관념이 우리 사회에도 하루빨리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병조**

범죄율 낮추는 방법

나는 영화든 소설이든 스릴러 장르를 좋아한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범죄학 강의를 찾아 듣는 편이다. 최근에 들었던 강의에서 누군가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범죄율을 낮추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동안 여러 강의에서 주위들은 걸 토대로 “검거율을 높여서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두려움을 줘야 합니다” 혹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일벌백계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대답을 예상했다. 강사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

“전과자를 줄이면 범죄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상당수의 범죄가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과자를 냉정하게 구분 짓고 외면함으로써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다.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는 사면·복권이 된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다.

한 예술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지원한 이씨는 서류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씨의 전과 사실이 기재된 신원조사 회보서가 도착하자 학교장은 이씨와의 면담에서 불합격을 통보했다.

학교장은 전과 기록은 참고만 했을 뿐, 이씨의 교사로서의 인품과 자질이 건학 이념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신원조사 회보서를 본 뒤에 돌연 이씨에 대한 평가가 변한 것으로 볼 때 학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씨는 사면·복권된 전과 기록이 조회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인사 결정권자에게 통보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꼈다.

이씨의 항의에 대해 예술고등학교장은 교원 임용 시 신원조사 회보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했을 뿐이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자 경찰청장은 신원조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임용 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형의 실효나 사면·복권된 사실과는 별개이고, 신규 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지 여부는 인사 결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을 명시해 회보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신원 조사기관의 장(長)은 형의 효력이 실효되거나 사면·복권된 경우라도 이를 회보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보안 대책 수립 등 인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모두 법대로 처리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원조사와 관련된 규정에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에도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 청구의 대상(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관계 규정을 보면 사면·복권된 경우 공직 취임이나 공무원 임용 등을 다시 허용하고, 전과 기록을 정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들 한다. 그래서 사람 속을 알기 위해 것처럼 특별한 이름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마다 걸어놓은 이름표, 찍어놓은 낙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그 인재를 활용할 수 없는 우리 사회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언제 어떤 일로 그런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는 사실도. 이영화

양치기 소년도 행복할 권리

‘6년간 가정폭력 하루 평균 28건…10%는 전과자, 10대 소녀 수차례 성폭행, 70대 전과자 영장, 한 해 평균 1만383건, 한 달 평균 852.3건, 하루 평균 28.4건에 달하는 숫자 전체 피의자 중 전과자는 총 7701명으로 12%에 달했다. … 경찰, 조폭집중단속 1343명 검거…전과자 97% 상당 재범 등…’

인터넷에 ‘전과’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뜨는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전과의 경중은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벌금형 같은 비교적 가벼운 전과에 대해서도 가끔 우리는 전과라는 말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 어쩌다 저지른 실수 한 번이 그림자처럼 평생 따라다니며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빵을 훔쳐 감옥에 들어가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한 번의 실수로 공무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

하고도 불합격 처리된 남자가 있다. 그는 서울시의 한 구청 보건소 전산 분야 전임계약직에 응시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장을 퇴직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합격을 통지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그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1년 전 정보통신망 이용(음란물 유포 등)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예전에 알고 지낸 여성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해당 구청에서는 그의 벌금형이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보건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비중을 따져보고 공무원으로서 준법성, 도덕성,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그가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업무 총괄자로 일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여겼다.

모든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다만 몇 가지 사유에서 그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단지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의 공무원임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전산 분야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님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히 벌금형 처분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 동화가 떠오른다. 사람들은 양치는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에 속아주다가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도와주지 않는다. 거짓말을 계속했던 소년을 예로 들며 우리는 아이

들에게 '거짓말은 나쁜 거야'라는 교훈을 주입하곤 한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거짓말 서너 번했다고 소년을 외면해버리는 어른들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다. 어른이라면 큰 그림을 보고 말해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소년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고 바른길로 이끌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작은 잘못 때문에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청춘의 능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과연 사회가 할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 **서미현**

누군가에게만 유리한 엉뚱한 잣대

얼마 전 만난 친구 두 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승급시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학교 다닐 때에는 공부와 시험이 학생의 본분이려니 하고 참았다지만 마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시험 때문에 고민할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단다. 사실 둘 다 평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편이라 그다지 심각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엄살을 부리고 싶은 모양이니 친구로서 받아주자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듣고 있자니 전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두 친구가 하는 고민에 공통적으로 영어가 있었다. 시험 항목 중에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어만큼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는 거였다.



한 친구는 영어학원 새벽반을 끊었고 다른 친구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원어민과 통화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했다. 학원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졸음을 쫓고 있을 친구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짠해졌다.

나는 둘에게 업무상 영어를 사용할 일이 많는지 물어봤다. 입사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예상한 대로였다. 한 명은 국내 영업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사무직이었으니까. 영어실력을 사원들의 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건 언뜻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헛웃음이 날 정도로 엉뚱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 한 남자도 엉뚱한 기준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빼앗긴 적이 있다. 당시 서른 살이던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시설관리공단 **의 기능직 특별채용 공고를 보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관련 분야 기능직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일 것'이라는 제한에 걸려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김씨는 기능직 직원을 뽑는데 왜 굳이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단 측의 설명은 이랬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난방직렬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곳은 시 여성회관과 시 국민체육센터로, 이 시설물들의 난방기계는 1.5~2t 규모인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난방기계 규모가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난방직렬 직원들도 고유 업무 이외에 공공 행정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 행정 업무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었다는 것이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영어가 필요 없는 부서에서 영어 실력을 보고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내에는 공공 시설물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도 많고 위와 같은 규모의 난방기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한 경험자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큰 규모의 난방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이가 필요하다면 자격 요건에 '1.5~2t의 난방기계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기재하면 됐다. 그리고 '공공 행정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막연한 기준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학연이나 지연을 기준 삼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곤란하다. **_이영화**

우리 동네 거주자만 공무원으로 모십니다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초등학교 등곳길에 나는 깨끗하게 걷고 있었다. 처음 다닌 초등학교는 조금 먼 거리에 있었다. 걸어서 30분. 어린아이가 걸어서 30분이었지, 아마 어른이 걸었다면 한 10여 분이면 주파했을 거리다. 그 후 중학교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이었고, 고등학교는 버스 정류장 4개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대학교 때까지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 내 통학거리는 만만했었다.

그러나 거친 사회 속에 보호 장비 하나 없이 툭 하고 버려진, 스톨네 살 나의 직장생활 초년병 시절부터 최근까지 통근거리는 평균 20km가 넘었다. 지하철을 타면 1시간은 기본이고, 걷는 시간을 합치면 1시간 30분 정도가 통근시간이었다. 야근을 하고 택시를 타면 잔돈과 함께 챙기던 영수증 속에는 또렷하게 찍혀 있던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 21.7km.

동료들은 먼 곳에 사는 나에게 직장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했다. 나 역시 직장 근처에서 살면 편할 거 같긴 했다. 그러나 나는 강남에

직장이 있다고 그곳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집과 직장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그래야 오히려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 만만치 않은 통근거리에도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직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넘쳤기 때문이다.

강남역 인근의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지역 구민만 뽑겠다고 하면 어떨까? 도봉구에 사는 나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걸까? 회사와 집이 가깝다고 일을 더 잘하거나 능력 발휘가 더 쉽게 될까?

이모 씨는 2007년 한 교육청이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응시하려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씨는 가족들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본인도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씨와 같이 다른 시·군 또는 권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아예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기능직이 아닌 다른 직종은 경기도 내에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했다.

따라서 거주지 제한을 두더라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거주기간 제한 요건 중 하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변경 전 거주지나 또는 변경 후 거주지 관할 기관 어느 한쪽에서라도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나는 집과 직장 사이가 멀면 좋겠다. 학교 다닐 때도 학교랑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친구들이 지각을 밥 먹듯이 했고, 자취생활 한다고 회사 바로 앞에 집을 구했던 회사 후배도 걸핏하면 지각을 하고, 심심하면 주말에도 불려나가 일을 했다. 코앞에 직장이 있으면 출근시간이 줄어 늦잠 자기는 좋겠지만, 일상과 일이 분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사이를 두어야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직장과 집은 좀 거리가 있어야 없던 열정도 살아난다. 서툰 내 경험의 결론이랄까. **서미현**

고졸은 국제 테러리스트를 잡을 수 없다

〈외사경찰(外事警察)〉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다.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로도 다시 만들어진다고 한다. 내가 그 드라마를 볼 때 외사경찰이라는 직함이 하도 낯설어, 일본에나 있는 경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늘어나는 외국인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 그들로 인한 사고 등을 담당하는 경찰이 바로 외사경찰이라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외사경찰은 국제 테러리스트들이나 나라 간의 이권 다툼, 마약 거래, 밀수, 스파이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멋지게 활동하는 이들로 그려진다. 외사경찰은 그렇게 첩보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비장함과 무게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론 그렇게 활동하는 경찰도 있겠지만 외국인들 바로 옆에서 친구처럼 그들의 문제점이나 소소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업무도 있을 법하다.

경기도 포천경찰서에서 근무한다는 한 외사경찰은 이슬람센터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식품점을 찾아 벵골어로 외국인과 인사를 나누는 다. 그녀는 벵골어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해외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익힌 방글라데시어가 의사경찰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한다. 그녀처럼 해외 봉사에서 익힌 언어가 의사경찰이 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언어 능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 의사경찰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전문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이모 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경찰청 의사요원 채용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경찰청이 지원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당시 경찰청은 의사요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을 없앴다고 홍보했지만, 국내에 공인된 어학 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 법에는 의사요원 응시 자격을 '외국어에 능통한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곧 외국어 능력을 증명하지 않기에 응시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생으로 제한한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외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의사요원 모집 대상인 어학 과정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 등의 학습 과정을 통해 어학 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어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어학 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의사경찰은 그 업무의 특성상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외국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니 그런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가 열려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리나라와 그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경찰이 될 뜻이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어학 능력은 학력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도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어는 기본, 외국인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내며, 작은 문제나 사고도 원활하게 해결해나가는 의사경찰이 많아져 외국인들도 제몫을 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세상이 되면 좋을 듯하다. 그 중심에는 분명 멋지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사경찰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만날 법한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서미현**

학벌, 어디까지 따라올래?

한 미국인 친구의 어머니는 미국에서 이른바 억대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고졸 출신이며, 컴퓨터 공부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운 뒤 한참 지나서 시작했단다.

우리나라에 사는 비슷한 연배의 고졸 여성을 상상해봤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과 양육을 포기하는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직장을 가지려고 해도 고졸 학력만으로는 결혼한 이준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뻔하다. 괜찮은 직장을 구했다고 한들 직장 내의 차별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결혼한 여성이라는 걸림돌 없이 고졸이라는 딱지만 있는 직장인들의 상황은 좀 나을까? 그렇지 않다. 얼마 전 한 취업 포털에서 고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응답자의 75.3%가 '고졸 학력이 직장생활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말하는 걸림돌이란 직종 선택이나 이직의 어려움, 학

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 학벌로 인한 능력의 평가절하, 심지어는 이성을 사귀거나 인맥 구축의 어려움까지 포함돼 있었고 이들의 54.1%가 이러한 제약 때문에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학력에 대한 차별은 고졸 졸업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나왔더라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며, 4년제 대학을 나왔느냐 전문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 또한 차별 요소가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있다. **한 과학원은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담당자를 모집하면서 그 자격을 '4년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폐기물환경기사 또는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다.**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평생 기술인력 담당자로 일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원은 관련 업무가 고도의 숙련된 경험 및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친구의 어머니는 고도의 기술 및 숙련된 경험을 요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무를 고졸 학력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히려 기술직이기 때문에 학력이 아닌 보유한 기술과 지식, 경험으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실제 2년제인 전문대학에 폐기물분석 관련 학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숙련된 기술'은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일진대, 자격 제한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두어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관련 업무를 평생 해도 기술 인력으로 등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학력 차별이다.

사람은 그 능력을 꽃피우는 시기가 따로 있게 마련이다. 환경이 좋

지 않아, 혹은 공부에 뜻이 없거나 소질이 없어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도, 해당 분야에 능력이 탁월하거나 경력이 오래되어 숙련되었다면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고졸 아줌마도 노력하면 역대 연봉을 받는 멋진 커리어우먼이 될 수 있는, 학벌과는 상관없이 노력하고 경험을 쌓으면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 멀지 않았으면 한다. **_이수지**

우리 대학 교직원엔 신앙인만 오세요

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미션스쿨을 다닌 적이 없다. 종교가 없었기에 다행스럽게 여겼지만, 간혹 교리 수업이라든지, 예배 때문에 자율학습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냥 좋겠다며 부러워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나에게 갑자기 그런 억압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상상해보기도 했다. 아마 적응하지 못하고 반발하며 곱돌았을 게 분명하다.

예전 회사 동료였던 김 차장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도 다니던 회사의 대표와 임원진이 모두 기독교를 믿는 바람에 기독교 신자인 척 했었다고 한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 모두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며 마음을 맞췄다고 했다. 결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직을 생각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보고 사장의 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원을 뽑는 것도 비일비재한 모양이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굴지의 패션 브랜드도 같은 종교인만을 직원으로 뽑는 걸 봐도 종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대학교의 행정직 채용에서도 종교가 선발 기준이 된 적이 있다. 서른두 살의 이모 씨는 두 대학에서 모집하는 행정직원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두 대학 모두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라 같은 종교의 신자들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이씨는 당연히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대학교에서는 행정직이 학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므로, 불교 신자가 아닌 자는 학교의 설립 취지 및 건학 이념에 위배되고, 채용된다고 해도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어 적응이 어렵고, 평가점수도 낮아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은 행정직원이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기존 교직원들과의 조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직원이 하는 업무는 특정 종교 교육과 교리 전파와 관계가 있지는 않다. 즉, 일반 대학의 행정직처럼 학교 조직 운영 및 관리 사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지원 업무와 교수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따라서 굳이 종교의 유무나 종류를 구별하는 게 그 업무의 질과 큰 관련이 없다.

또한 대학들이 특정 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역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로 인해 해당 종교를 갖지 않은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이럴 경우 두 권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학원을 함께 다닌 한 지인이 생각한다. 그녀는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취직해서 내게 자랑했다. 나는 학교 이름을 듣자마자 미션스쿨이라 반사적으로 물었다. “어머, ○○○인이구나!”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날라리죠 뭐”라고는 말했지만, 그녀 역시 특정 종교를 믿고 있기에 교직원 시험에 합격했다. 지원 경쟁이 치열해 들어가기 쉽지는 않은 대학교 교직원은 흔한 말로 ‘신의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학교 교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사람을 모두 사랑하라는 종교의 기본 틀을 깨는 게 아닐까. 종교를 믿는 이들만 뽑고 이들과만 함께하고 사랑한다는 건, 어쩐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기분까지 들게 한다. 내가 아는 디자이너는 유명한 패션 브랜드 회사로 이직했다. 그 역시 거짓말로 그 종교를 믿는다고 꾸며서 입사했다. **서미현**

미션스쿨 교수의 조건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사립이었고 이른바 미션스쿨이라 하는 기독교 재단 소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린다거나 다른 학교에 비해 엄격한 교칙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전체 조회의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정도였다. 우리는 어차피 교장 선생님의 훈화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가 더해지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종교도 다양했다. 내 친구 중에는 사찰 고등부 부회장도 있었고 부모님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아이도 있었고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아이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평균적인 종교 신자 분포와 비슷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종교는 그때도 지금도 알지 못한다. 알 수 있는 계기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수업의 내용이나 성적에 선생님의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대학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모양이다. 이 대학교는 미국 남장로회 교단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2005년 건축학과 교수 채용 공고에 세례 기독교인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자격 제한을 하면서, 세례 교인 증명서를 제출할 것도 명시했다.

세례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아예 응시조차 할 수 없었던 유모 씨는 이것을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 교과과정을 보면 종교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학부 교수가 세례 기독교인이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학교는, 사립 대학교로서 설립 이념에 맞는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구성원을 선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또한 설립 이념에 관심이 없는 교수를 임용할 경우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만약 이 대학교가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이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책임지는 일반 종합대학이었다. 학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재학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재학생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었다.

물론 ‘진정직업자격’이라고 해서,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이 요구하는 제한 사유, 즉 ‘해당 교수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혹은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인지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다.

그러나 건축학과 교수의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례 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를 내세워 유능한 교수를 채용할 기회를 버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최상의 학습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학교로서는 직무 유기에 가까운 행동이라 볼 수 있겠다. 내가 그 학교 학생이었다면 모교의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처사에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다.

건학 이념을 전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월요일 아침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훈화를 지루하게 반복할 수도 있고, 능력과 상관없이 같은 종교의 교수만 채용하는 것을 고집할 수도 있고, 유능한

교수를 채용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는 학교의 자유겠으나 그 자유는 평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영화**



3. 직장에 차별이 스며들다

취업해도 차별은 여전히 주변을 맴돈다.
체중 감량을 재직 조건으로 내거는 회사는 드물겠지만,
승진 때 남자만 우대하는 회사,
아이를 낳으면 눈치 봐야 하는 직장은 적지 않을 듯싶다.
비정규직은 교육받을 수도 없고, 질병이 있으면 곧바로 쫓겨나기도 한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나이가 막아서고,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정당인은 배제당한다.

약자는 밀어내야 한다고 믿는 현실,
내가 일하는 곳이 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체중 감량 못하면 회사 나가세요

지난여름 내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텔레비전 광고가 있다. 체중 조절용 시리얼 광고였는데,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다. 여직원이 말을 걸거나 뭘 물어봐도 남자 상사가 거들떠도 안 보고 괜한 짜증만 내자, 망심했다고 생각한 여직원이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여직원은 광고하는 시리얼로 다이어트를 하고 결국에는 ‘몸매 종결자’가 되어 회사에서 모든 남직원이 그를 추종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다이어트 심리를 자극하려는 광고의 의도는 알겠지만 회사가 무슨 슈퍼모델 트레이닝 하는 곳도 아니고, 체중이 조금 나간다고 여직원의 말을 무시하는 남자 과장의 태도는 무엇이며 아빨싸 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여직원은 또 뭔가. 그리고 똥똥하면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는 식의 내용으로 대중이 보는 광고가 만들어지는 밑바탕은 무엇인지, 광고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곤 했다.

그런데 실제로 한 회사에서 이 시리얼 광고보다 더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한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에서 벌어진 일인데, 회사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똥똥한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심지어 사직까지 종용하며 강요해 한 직원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실제 사직한 것이다.

이 부사장은 체격이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 5명을 직접 지목해 회사 임원들에게 이들의 체중 조절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아이돌 트레이닝 기획사나 다이어트 단식원의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부사장이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엔, “한 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 바란다” “목표 미달성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고 한 달 후 미달성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직 조치를 하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쿵하면 짹하고 통하는지, 회사 임원들은 바로 부사장의 요구의 발 맞춰 구체적인 계획서 형식을 보내며 5명의 직원에 대한 체중 감량을 관리하겠으며, 사직서도 미리 받아놓겠다고 보고했다. 또 한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조깅 운동을 할 것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서 작성 및 체력 테스트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회사는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검도, 탁구, 등산 등 운동에 필요한 장비나 강사 등을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그래, 부품 생산 업체이니 장시간 같은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으로 운동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 참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지적해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게 하며, 감량하지 않을 경

우 사직까지 강요하는 것은 거의 개인에 대한 전인적인 구속 수준에 이르는, 외모차별인 동시에 굉장한 오지랖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부사장처럼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모 차별은 알게 모르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쪼네, 피부가 많이 상했네, 점을 좀 빼봐라 등등 거침없고 날카로운 비평이 날아온다. 이런 것들까지 외모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위 경우는 외모 때문에 고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태의 근간이 되는, 우리 사회의 둔감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몸무게의 작은 변화나 코의 점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직장 동료들, 혹은 사직서라는 채찍을 들고 직원들의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위 회사 부사장, 그들의 가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까지는 매우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배가 나왔어도 내 배요, 아무리 더러워도 내 피부지 회사 업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의 용모나 신체 조건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굉장한 실례이면서 용모 차별이다. 살 좀 쪼다고 직원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광고 속 과장과 과제 중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위 회사의 부사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지나친 오지랖은 인권침해라고. **이수지**

남자만 승진하는 어느 회사



우리 회사는 여자 직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우리 부서의 남자 직원들은 가끔 다른 부서 남자 직원들과 뭉치게 될 경우 “여자들이랑 일하는 거 좀 피곤하죠”라는 말을 종종 한다. 어떻게 여자인 나를 앞에 두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마디 할라치면 옆에서 다른 직원이 “아 그렇죠~ 솔직히 남자가 같이 일하기 편해요. 여러모로.”라고 맞받아친다. 이에 동의하는 이는 남자들뿐만이 아니다. 한번은 팀장이 여자로 배정되자 팀 내 한 여사원이 “난 솔직히 상사가 남자인 게 편한데”라고 한 적이 있다.

이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 가장 자주 하는 소리는 “여자들은 회사나 조직의 운영보다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을 더 중시해서 업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정신이 없다” “뭘 좀 시키면 그냥 좀 하면 되는데 이리저리 따지고 툭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등이다.

일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동료들끼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이런 평가가 공공연해지면 고정관념으로 변하기 십상이고, 그렇게 되면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판단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한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직원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동료 및 상사의 성별에 대한 호불호가 승진 인사에 노골적으로 반영돼 수년간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에서 승진은 정기적인 직원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장들이 추천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는 구조다. 그럼 그 추천의 근거라도 공정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근 10년간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 추천이라는 것은 ‘일하기 편하고 피곤하지 않은’ 남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에서는 여자 직원의 경우 6년 이상 재직하고도 계속 사원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10년 정도 재직하면 주임으로 겨우 승진한다. 반면에 남자 직원들은 주임은 거의 건너뛰고 5년 정도 지나면 대리, 6년 정도 지나면 과장으로 승진한다. 그렇다보니 전체 직원 중 대리 이상의 여성 직원은 채 5%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리급

이상은 남성, 사원 및 주임은 여성이라는 기형적인 구조의 조직이 되어버렸다. 부서장들 탓할 것도 없다. 부서장들도 내 옆의 동료들처럼 단순히 여자들은 같이 일하기 피곤하고 상사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일 테니.

‘저는 남자 직원이 싫어요’라는 편견 어린 주장을 만들려면 그 근거를 수십 가지도 더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느낌일 뿐 논리가 희박한 주장일 것이요, 자신이 상대방과 화합하지 못하고 일 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하는 칭얼거림에 불과할 것이다. 여성이라고 상사 노릇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어림짐작을 하기 전에, 공정하고 구체적인 승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승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전에 여자는 동료로서, 상사로서 피곤하고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성급한 일반화와 차별하는 의식부터 사라져야 하겠다. **이수지**

왜 학생주임은 항상 남자일까?

아침잡이 많아 지각이 잦았던 나는 학교를 다닐 때 항상 교문 앞에서 지각생을 잡는 학생주임 선생님과 마주치곤 했다. 3년을 다니면서 마주치는 학생주임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언제나 남자 선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보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에도 학생주임은 항상 남자였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전체 교사의 성비는 여성이 높았는데 학생주임은 꼭 남자 교사가 담당했었다. 남자 교사라고 반드시 지도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쨌든 이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주임은 무서운 남자 교사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다.

수년이 지났지만 성 역할에 대한 학교의 고정관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나보다. 심지어 부산의 한 여고에서는 특정 과목에 대한 교사를 배정하는 데 남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적이 있다. 정기 교사 인사에 앞서 체육, 윤리, 국어 과목 교사를 우선 배정했는데, 그 대상을 남자 교사만으로 제한했다.

해당 학교는 전체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춰 학생들이 성 역할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자 교사가 교통 통제나 학생 등하교 지도에 유리하기도 하고, 진학 지도 경험이 있는 남자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 교사로 제한해 우선 배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성 역할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이라. 그런데 남자 교사만 진학 지도나 교통 통제를 맡고, 여자 교사는 이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성 역할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진학지도나 교통 통제 같은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왜곡된 편견만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이 교통 통제든 진학 지도든, 각각의 업무는 교사마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배정되어야 할 일이다.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성 역할에 대한 균형 감각을 키



워주기는커녕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다.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차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중식하고 양성 평등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키우는 데 학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위의 사례처럼 교사의 업무를 성으로 나누어 분배하는 경우도 있고, 몇 번의 검증과 개정을 거친 교과서에서조차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묻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이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고 성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건전한 시선을 키우기 위한 학교의 역할, 스스로 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수지**

육아휴직 끝났으면 퇴사하라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여자가 많은 우리 회사에도 출산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임신 중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있다. 생리만 해도 컨디션이 안 좋아 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회사를 뜨고 싶은데, 임신까지 하면 어떨까. 실제 보면 임신한 직원들은 가끔 힘이 들어 주변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여직원 휴게실 마련 등 전사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과거에 비해 일하는 여성이 훨씬 많아졌고, 임신은 사회의 인력 재생산 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임산부 및 출산한 근로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출산하는 여성들은 산전후를 통해 육아휴직 90일(유급 60일)을 부여받아야 하며, 임산부에 대해 시간외 근로는 금지한다는 등의 제도가 그것이다. 3개월 휴직하는 걸로 몸이 잘 회복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실제로 육아휴직 후 돌아온 직원에 대한 대우는 어떨까?

한 대기업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3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다. 이 여성도 임신하고 나서 약 6개월간 출산 및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이상했다. 휴직이라 함은 자신이 하던 업무와 직위에서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할 텐데, 휴직 기간 중 경영지원실장이 전화해서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육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테니, 복직 전에 퇴사를 하라” “남자팀장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직을 강요했다. 결국에는 팀장이던 직위가 팀원으로 강등되어 복직 발령이 났고, 복직 후에도 업무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며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면 육아 문제로 회사에 대해 그만큼 충성을 못할 테니, 팀장 같은 자리는 출산이나 육아의 부담이 덜한 남자한테 맡기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나온 대로 3개월 육아휴직은 주겠지만, 하던 업무는 계속 줄 수 없으니 웬만하면 퇴직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고용 차별이다.

30대 중반의 한 지인은, 자기 나이 정도가 되면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여자로서 팀장 정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슬픈 이야기다. 남자

도 결혼하고 육아도 어느 정도 맡아 할진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 포기하고 팀장 못 하는 그런 남자는 없지 않은가. 반면 여성들은 애를 낳았다고 하면 좀 쉬고 왔다는 이유로, 애 키우느라 바쁘겠지 하는 이유로 사직까지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

출산처럼 신체적으로 여성에게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사직을 강요당하는 것은 성별 혹은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임신부의 낳을 맞아 일하는 임신부들, 출산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출산하는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수지

정규직과 상담하고 싶어요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궁금한 게 생기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일이 빈번하지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나 불만이 생기면 아무래도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관련 기관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정보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메일로 문의를 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나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담원의 프로답고 친절할 자세는 인터넷에서는 얻기 어려운 신뢰감을 형성해 고객이 아무리 큰 불만이 있더라도 쉽사리 화가 나지 않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상담할 때 용건을 말하기에 앞서 “저… 혹시 전화 받으시는 상담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나요?”라거나 “비정규직 상담원이신가요?”라는 황당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할 때는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다. 비정규직 상담원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배제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을 제공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상담원들은 상담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교육 대상에서 배제했다.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서 배제했다고 하면, 비정규직 상담원들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일 테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 소비자보호원의 말대로 비정규직 상담원의 업무가 상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상담이 매뉴얼에 나온 대로 같은 말만 반복하면 되는 그런 상담은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원이라면 소비자와 관련 있는 모든 것, 즉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금융이나 법률 같은 전문적인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담해야 한다. 그것뿐이랴. 불만을 잔뜩 품은 소비자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교양적인 자세와 상담에 대한 고난도의 테크닉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은 시간제 근로자의 2년 계약 종료 후, 그 직원을 우선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도 미래의 정규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교육에서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교육뿐이 아니다. 경조금이나 경조휴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 후생 대상에서는 당연히

배제되고, 육아휴직에서도 배제된다. 심지어 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때도 비정규직은 빼고 내란다. 하긴, 일 더 잘해보려고 교육받겠다는 데도 배제하는데 다른 거는 오죽하랴.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사회가 못나서 만들어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철폐에도 힘을 써야겠지만, 타당한 근거 없는 배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_이수지**

폐쇄공포증 김주현, 사장 그만두세요

2011년 드라마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인기 캐릭터 중 ‘차도남’이라는 게 있다. 차도남은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현빈)으로부터 인기를 얻은 캐릭터로 차가운 도시 남자라는 뜻인데, 김주원의 캐릭터를 이어 <보스를 지켜라>의 차지현(지성)이 까칠하고 도도한 캐릭터로 다시 인기를 끌었더랬다. 둘 다 부자에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그야말로 가질 거 다 가진 주제에 까칠하면 재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바로 겉으로는 도도하지만 안으로는 여린 감성을 가진 인간적인 면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주원과 차지현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라는 남모름 약점도 그 인간적인 면을 도드라지게 하는 데 한몫한 장치였다.

드라마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재벌 2세들이 여주인공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도 쟁취한다는 결론으로 아름답게 전개된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면 어떨까?

김주원과 차지현은 재벌 2세이기도 하거니와, 한 회사의 사장이나 본부장쯤 되는 고위 간부라 회사 직원들에게나 혹은 경영권 승계를

노리는 가족들에게 본인의 질병을 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드라마에서는 가능했다. 하지만 사장이나 사장 아들이 아닌바에야 일반 직원들은 자신의 질병을 숨길 도리가 없다. 채용 전이나 회사를 다니는 중간 중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승진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다니는 29세인 김모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신체검사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이 발견되었는데, 그 뒤로 일어난 일의 전개는 드라마 주인공들의 그것, 사랑의 성취와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스토리와는 정반대였다. **한국철도공사가 따라야 하는 규칙은 김씨가 가지고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사랑과 성공의 쟁취는커녕 승진 시험 응시 기회도 박탈했던 것.**

김주원의 폐쇄공포증이, 차지현의 공황장애가 그들의 사장 업무, 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를 초래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장이라도 제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김씨의 경우도 대량수송을 포함한 역무원의 업무를 맡고 있고, 열차 안전 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라면 승진에 제약을 받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라는 질병이 과연 역무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인지와, 만성 활동성 간염 보유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다.

만성 활동성 간염은 그 자연 경과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간경변증, 간성뇌증 등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비활동성 간염보유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진행 경과가 사람마다 다양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을까?

폐쇄공포증이든 공황장애든, 아니면 만성 활동성 간염이든 질병을 가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 어떠한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승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이다.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질병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질병을 가진 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드라마처럼 이를 함께 극복할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을 선물할 수는 없겠지만, 병력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김씨와 같은 병력자들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_이수지**

교사 전입, 45세 이하만 오세요

친구를 만나러 강남역에 갔다가 꽤 긴 줄이 늘어선 한 술집을 봤다. 도대체 뭐길래 이 젊은 남녀들이 술 한잔 먹겠다고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나 하고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큐피트 카드를 건넨다든지 하는 식으로 건전하고 자연스럽게 이성과 만날 수 있는 이른바 '신 개념 부팅 펍'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오호 재미 있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친구의 지인이 한번은 재미있는 곳 같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30세 이하의 입장을 불허했다. 아니 30세 이상은 이런 데 들어가서 부킹 좀 하면 안 되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이른바 '물 흐린 다'는 핑계로 입장을 제한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술집에서까지 나이 제한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정말 나이 많으면 서러워서 살겠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국 사회는 유난히 나이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 술집같이 민간 사업

장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에서, 심지어는 공공 영역에서까지 나이 제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한 국립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 전입을 받는데 그 지원 자격을 45세 이하로 제한해 문제가 된 일이 있다. 해당 학교에서 교사의 임무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사범대학 학생들에 대한 교육실습생 지도도 해야 하고,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설 연구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 임무를 효율적으로 맡아 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그 자격이 있다고 제한한 것이다.

교사로서 특수 임무가 있는 것도 알겠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학교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그 임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는 기준이 왜 나이가 되어야 하는 걸까? 교원자격증이나 교원임용시험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충분히 많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기타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등의 방식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다.

해당 대학교는 또 부설 중·고교의 교직원이 되면 승진 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이 없으면 승진을 목적으로 한 교사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국립대학 부설 중·고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국립대학 부설이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감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승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짐작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굳이 이런 걸 가려내고 싶다고 하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인데 45세 이하로 선을 갈라 잘라내는 것은 오히려 판단의 기준을 흐리는 일이다.

부킹을 하는 술집이든 국립대 같은 공공 교육기관이든, 나이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이유는 나이 차별을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오랜 습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인식의 개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만큼은 나이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점검을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20대가 아니면 어쨌고 45세가 넘으면 어쨌단 말인가.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고 싶으면 즐길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더 좋지 아니한가. **이수지**

정당 가입자, 정규직 전환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좋은 싫든 각자 다른 정치색을 띠고 있으며 정치에 관여하며 살아간다. 대신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위의 시선도 달라진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선거철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외된다.

그런데 선거철이 끝나 평상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극성맞다거나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전체와 함께 가지 않고, 소위 나대는 구성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조직 사회의 특성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신의 정치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다.

10여 년 전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해오던 성모 씨는, 200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무원 요양비 심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공단이 2007년 5월 31**

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별정직으로 전환했는데, 성씨는 14명의 전환 심사 대상자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되었다. 성씨가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게 이유였다.

공단은 직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무원연금 제도의 목적상 이를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주의 의무,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성씨는 이러한 공단의 규정을 어겼고 따라서 별정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무원 등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신분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씨를 비롯한 공단 직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기본권을 제한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성씨는 정당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인 공무원 요양비 심사 및 지급 업무 수행에 방해받았던 적도 없었거니와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더더구나 없었다. 공단이 내린 조치의 근거가 되었던 인사규정 자체가, 성씨처럼 자신의 정치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만들어낸 잘못된 규정이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본래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산다는 뜻이었는데, 요즘엔 그저 동글동글하게 사는 게 좋다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두 가지 뜻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같은 전체를 지향하는 조직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모든 돌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놓으면, 정말 좋기만 할까? **_이영화**

4. 월급 받을 때 차별도 함께 받다

직장에서 급여나 각종 수당을 받을 때도 차별은 고개를 내민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우대받고,

임시직이라고 호봉이 제한된다.

시간강사, 학습지 교사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묘한 계약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출산휴직을 하고 왔다고 성과금을 주지 않는다.

비정규직에게는 주는 수당보다 제외되는 수당이 더 많다.

급여는 그저 노동의 대가다.

노동하는 이의 조건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동의 가치를 환산하면 된다.



남자는 힘든 일 하나까 돈 더 준다

어느 비디오 잡지사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다. 나는 기자로, 다른 여자 두 명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 디자이너가 새로 입사했다. 나와 동갑내기인데다 군필이었으므로 경력을 따지면 나보다 2~3년은 연차가 모자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사한 첫 달, 나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다.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사장에게 따져 물었고,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책이나 포스터를 묶어서 차에 싣는 힘든 일을 하나까 돈을 더 준다”고 했다. 나는 입이 딱 벌어져 “그럼 여자들이 전화 받고, 아침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사장님은 말로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그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켜버렸다. 내가 졌다.

그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일인데, 요즘에도 심심찮게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고 한다. 사측의 변명 역시 그때 사장님이 한 말과 비슷하다. 어느 전자 회사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9명은 남자

들보다 매월 6만~10만원 낮은 기본급을 받았다. 각 생산 라인에는 남녀 직원이 혼재되어 조립, 검사, 포장 등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말이다. 이에 대한 사측의 변명은 생산 라인에는 조립 업무 외에 상차 업무가 있는데, 생산된 물건을 차에 싣는 이 출하 작업을 남자 근로자들이 담당했고, 이 업무가 조립 업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아 임금을 더 줬다는 거였다.

알고 보니 상차 작업은 일주일에 1~5회로 불규칙하게 이뤄졌고, 남자들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근로자들이 함께 했다.

10여 년 전 사장님의 변명이 생각났다. 그 회사의 포스터와 책 운반하는 일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다. 설거지와 전화 받기와 청소는 매일매일 있었고.

또 울산의 어느 공장에서는 여직원 8명이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자격증, 기술, 학력 조건으로 입사했고 유사한 노동을 했는데도, 남자들은 기능직 호봉으로, 여자들은 생산직 호봉으로 구분해서 여직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줬다.

회사에서는 성별을 분리한 게 아니라 생산직과 기능직을 분리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생산직과 기능직의 채용 자격요건은 기술, 학력, 자격증 등에서 동일하나, 생산직에는 모두 여성만이, 기능직에는 모두 남성만이 채용되었다. 즉, 생산직과 기능직의 차이가 성별의 차이밖에 없었던 거다.

공장은 이런 꼼수를 통해 여자들에게는 시작부터 낮은 임금을 줬고, 호봉표를 달리해 장기 근속하더라도 호봉 구간이 남자들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여자들은 같은 직급의 남자들보다 항상 20~45%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말로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면서, 밥벌이 현장에서 이런 차별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이런 변명과 꿈수가 없어질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유정**

임시직은 호봉도 제한

대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유치부 캠프에 간 적이 있다. 나는 초반에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세요” 하는 경어체를 썼다. 거기서 오래 일한 선생님들은 그런 나를 보며 귀엽다는 듯이 웃었다. 단 1박2일의 캠프였을 뿐인데, 나는 만나절도 되기 전에 언제 존댓말을 썼냐는 듯 “야, ○○○! 너 그렇게 말 안 들을래?” 욕박지르기 시작했고, 그제야 선생님들은 “네가 드디어 유치부의 현실을 알았구나” 했다. 캠프를 마치고 나는 거의 녹초가 되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5~6세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눈앞에 뻗어 있는 신발주머니가 없어졌다고 울어대는가 하면, 자리에 앉아 밥 먹는 쉬운 일조차 혼자서는 못하는 아이들을 1박2일도 아니고 매일 돌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이런 일은 못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유치원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을 대하는 초등학교 교사보다 더 힘든 게 유치원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선생님을 차

별 대우한다니 딱한 노릇이다. 어느 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무려 16년간 근무한 선생님이 호봉 승급을 못 받았다. 1991년부터 근무한 이 선생님의 신분은 임시강사였지만, 무려 16년간 아이들을 돌봐왔다. 그런데 2002년부터 도 교육청이 임시강사의 호봉 상한을 26호봉으로 제한했고, 이 선생님은 5년간 호봉 승급을 받지 못했다.

도 교육청은 관련 지침에서 임시강사의 호봉 상한을 26호봉으로 제한하는데, 이는 호봉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계약제 교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시강사에 비해 정규 교사가 비교적 책임이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담당 업무의 경중은 정규 교사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각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설 유치원 임시강사가 담당하는 종일 반 업무가 책임이 낮은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걸 5~6세 아이들을 하루만 돌봐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호봉 산정의 근거는 교원 경력이며, 호봉 승급 제도는 직업적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호봉을 올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임시강사의 직업적 숙련도가 26호봉 이상이 되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호봉 승급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같은 일, 아니 어찌 보면 더 힘든 일을 하는데 임시강사라는 이유로 호봉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차별이다. 다행히 도 교육청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임시강사의 호봉 상한을 없앴다고 한다. **_이유정**

시간강사는 경력이 안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졸업을 앞둔 주위 사람 대부분의 꿈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계약이 한창 많아지고 있었던 때라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가르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는 절대로 받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다. 거기에 더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훨씬 못하고, 한번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럼에도 졸업하자마자 뚜렷한 목표를 찾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경험을 쌓고자 하는 생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며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온 것이 내 경우다.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또 주위의 비정규직들을 보면서 느껴온 비는,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뚜렷한 선은 없다는 것이다.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회사에서 책임을 덜 묻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난이도

도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 더해 급여도 공정하지 않고 정규직이 받는 각종 혜택에서는 배제되면서 2년 후에는 버려지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라 가끔 울화가 치밀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얻는 경험이 있고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이 되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나마의 희망도 싹둑 잘라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으로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청의 한 연구직 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대학교에서 4년 6개월간 시간강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공무원에 임용될 당시 이것이 전임강사가 아닌 시간강사였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반대로 한 경제연구원에서 일하다가 대학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연구원에서 일한 경력이 정규 연구원이 아닌 위촉 연구원이기 때문에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 인정이라 함은 임용될 업무와 연관된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연구한 경험이 있으면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지속적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갔다면 시간강사로서 연구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위촉 연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규 연구원이나 위촉 연구원이나 업무의 주요 내용은 연구이고, 둘 다 상시적인 업무인데, 다만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연구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러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등 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은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력 환산은 업무와 연관된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에 해당 경력과 임용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그걸 인정해주고 말고 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한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규직 경력도 경력이고 비정규직 경력도 경력이다. 정규직도 사람이고 비정규직도 사람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이수지



학습지 교사,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네

몇 해 전, 어린이를 위한 직업 안내서를 쓴 일이 있다. 300여 개의 직업을 선정해 직업인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학교 교사와 학습지 교사도 인터뷰 대상 목록에 넣었다. 학교 교사 인터뷰는 아이의 지난 학년 담임선생님을 찾아뵈었고, 학습지 교사 인터뷰는 아이의 수학공부를 봐주러 오시는 학습지 선생님에게 커피 한잔을 권하며 직업에 있어 필요한 능력과 어려운 점을 여쭙았다.

“저도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 장래 희망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 성적이 오르거나 학교생활에 도움을 줬을 때는 더없이 기쁘고 성취감도 느끼죠. 교사에게 아이들의 성장은 보람이자 자긍심이니 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저희만의 생각인지 세



상은 인정해주지 않네요. 그럴 땐 기운이 빠져버려요.”

인정받자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아이들의 교사가 아닌, 한 건이라도 수업을 따내려는 영업자 취급을 받을 때면 아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진다고 하셨다. 혹시 내가 그 사회의 일부는 아니었는지 당황스러웠다.

선생님의 착잡한 마음을 대변해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 **학습지 교사로 10년 이상을 근무해온 42세의 조씨는 중학교 사회교사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학습지 교사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이상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경력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같은 사교육 종사자인 학원 강사는 물론 비교육 분야인 농업 종사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주 등 대부분의 사회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가르친 학습지 교사 경력은 교육공무원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였다.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직업으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학습지 교사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학습지 교사는 엄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 선생님보다 가까운 사람이 학습지 선생님이다. 일대일로 아이들을 만나다보니 아이들의 고민이나 생각을 더 잘 읽고 이해해주기도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

람으로서 아이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한 사람이 학습지 교사다.

비록 학습지 교사 업무가 법률이 정한 대로 이뤄지는 공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기에 공공교육 종사 경력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일면 당연할지라도, 같은 사교육 종사자인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호봉 산정 시 경력을 인정하면서 학습지 교사는 농업이나 사업에 종사한 사람도 인정받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다니. 업무 연관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일률적 잣대로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다행히 그 후 학습지 교사 경력도 교육공무원 호봉 산정 때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나 혼자만의 고마움과 존경이 아닐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 판결로 집에 오시는 학습지 선생님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아이를 불러주는 그 따뜻한 목소리가 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_유수정**

계약직은 경력이 안 된다고요?

워낙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를 밥 먹듯 해서 20대 때는 이력서를 쓸 때마다 난감했다.

겨우 몇 달밖에 다니지 않은 곳을 써넣기도 그렇고, 그런 직장을 빼자니 이력서가 앙상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몇 년씩 진득하게 한 직장에 붙어있지 못하나 자괴감에 빠졌다. 이제 경력이 오래되다보니 짧게 다닌 직장은 쓰지 않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장만 적는 데도 이력서는 한정 없이 길다. 아마 가장 좋은 이력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을 적은 것일 게다. 채용하는 곳에서는 구직자의 성실성과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줄 테니까.

그러나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일하고서도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A공사에 지원한 김모 씨는 정규직 근무 경력만 인정하는 규정 때문에 건설회사 계약직 경력 5년여를 인정받지 못해 호봉 산정에 불이익을 받았다.** A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경력 인정 기준 설정을 근거로 비정규직은 경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공사는 정규직인 경우 현 업무와 동종 경력이 아

나라도 70%를 인정하면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B공사에 들어간 이모 씨 또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B공사는 초임 호봉을 산정할 때 전임강사 경력은 80%,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 기업체 경력에 대해서도 50%를 인정하면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공사는 경력 인정이란 업무 연관성 때문이 아니라 입사 이전의 경력을 인정, 보상하는 차원에서 설정한 것으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달리 조직 경험이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뿐만 아니라 일반 관공서와 대다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전임강사 경력은 80% 인정하지만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 경력 환산 시 강사 경력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2006년 1월에 삭제되었다. 대학 강사를 전임강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1972년에 만들어진 경력환산표를 근거로 한 B공사의 내부 관행이었다. 2년 6개월에 걸쳐 주당 25시간씩 강의했던 김모 씨를 주 2~3시간 종사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시간강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C공사에서도 경력사원의 경력 인정 문제가 불거졌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



제 직원으로 일한 유모 씨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정부 출연기관인 한 연구소에서 일했던 안모 씨는 정부 출자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은 다르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 일을 덜 하거나 안 하는가? 아니면 이틀에 한번 출근하나? 왜 경력 산정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유정

방위병은 군인이 아닌가?

여자들은 싫어하지만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빼먹지 않는 것이 군대 얘기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남편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선 여전히 군대 이야기를 한 번씩 듣게 된다.

물론 군대라고 해도 다 같은 군대가 아니었다. 해병대나 특수부대를 전역한 사람은 목소리가 높았다. 전방에서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어깨에 힘이 실렸다. 옆에서 듣다보면 묘한 심리적 위계질서가 포착된다. 하지만 막바지로 가면 결국 내용은 '내가 제일 힘들게 군 생활을 했어'로 귀결된다.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한 다양한 편법에 솔깃해하고, 병역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분노를 표현하며 억울해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남자들이 꾸는, 가장 싫은 악몽도 서류상 착오로 재입대하는 꿈이라고 했다. 남자들에게 군 입대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어떤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모였다 하면 군대 얘기를 하는 남자들이라니. 힘들었던 때를 그런 식으로 치유하거나 그 시절을 보상받고 싶은 마

음 때문이리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군 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이 자신의 군 복무 경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개월 방위병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에서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소집이 해제된 자는 방위소집이 면제된 것으로 규정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를 근거로 6개월 미만의 방위병 복무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넣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위의 조항은 방위소집 해제와 관련된 조항일 뿐 재직 기간 산입과는 관련이 없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재직 기간을 계산하는 조항이 따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방위소집 해제와 관련된 조항일 뿐인 병역법 시행령을 참조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 기간(방위소집 상근예비역 소집 또는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상관없이 그 근무 기간 전체를 재직 기간에 산입해줄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방위병 복무 경력도 재직 기간에 포함해야 마땅하다.

특수부대나 현역에 비하면 6개월은 짧고, 훈련의 강도를 따지자면

좀 약할지 모르지만, 마치 없는 시간처럼 지워버리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다. 그들 역시 잠시 사회활동을 유예하고 한창 빛나는 청춘의 한때를 병역에 몸담았다. **김성혜**

3·1절에 쉬었으니 퇴직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지만, 내 동생은 한때 중학교의 기간제 과학 교사였다. 원래 있던 교사가 출산휴가를 가고 대신 들어갔는데, 그 교사가 복직하고 난 뒤에도 과학 과목 교사가 모자라 계속 다니게 되었다. 기간제 교사란 일종의 계약직으로, 정규 교사와 똑같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업무도 똑같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같다. 그러나 많은 계약직이 그러하듯 기간제 교사 역시 각종 대우를 두고 정규 교사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동생이 학교에 다닐 당시엔 방학 중에도 월급을 받았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빈발하는 요즘은 오히려 방학 중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 같다.

내 동생과 같은 또래인 한 교사는 방학 중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 중학교에서는 시 교육청에 책임을 미루었고, 시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책임을 미루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간제 교원에게도 방학 때 보수를 지급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7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뒤 2001년 이후에는 방학 중에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방학 중의 보수 지급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고려해 정할 사항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겨울방학 전에 임용되었지만 방학 이후에도 재임용되었는데도 방학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방학을 사이에 두고 재임용하는 이런 방식은 퇴직금 회피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학교는 이런 방식으로 52명의 교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호봉 제한이 10호봉으로 정해져 있어 정규 교사의 40호봉과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사례는 이 시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다. 부산 소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경력이 꽤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14호봉의 월급밖에 받지 못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14호봉 제한을 두는 경우는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자가 기간제 교원에 임용된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럼에도 모든 기간제 교원에게 14호봉 제한을 둔 건 잘못이다.

또 다른 도 교육청 소속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정규 교사들에게는 유급 휴무일인 3월 1일과 일요일인 3월 2일을 제하고 3월 3일부터 계약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던 교육청은,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을 임의로 배제한 채 계약 기간을 정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를 차별한 것

이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의 대체 인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에는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정산 시 방학 기간을 제외하지 않아야 하며, 호봉 상한도 없어야 한다. **이유정**

산전후휴가에도 성과상여금 주세요

저출산 시대라 요즘은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는 회사가 많이 줄었다. 또한 육아휴직을 남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출산과 육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중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문제도 있다.

출산을 한 여교사 60명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에 넣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중앙인사위는 실제 근무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공무상 병가, 병역 휴직을 포함한 모든 휴가와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다른 휴가 및 휴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

는다고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즉 남자들도 쓸 수 있으므로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성과상여금은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취지로 하므로 모성 보호와 여성 권익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아니라 다른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런데 2003년에 이미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산전후휴가가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거나 기간 등에 대해 선택의 여지도 없고,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산전후휴가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 기간에 포함한 것은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이미 임신을 했는데 출산하지 않을 수 없고, 남자가 출산할 수는 없으니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휴가이며, 그러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산전후휴가를 실 근무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성과상여금 제도가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취지로 하는 것이므로 모성 보호와 양성 평등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은 받아들였다. **이유정**

같은 일에도 월급은 다른 배달부들

대학생이 많이 읽는 진보적인 언론사의 계열사에 입사했을 때 나는 기뻐다. 학창 시절부터 호감을 가진 곳이기도 했고, 이전까지 다닌 소규모 회사에서 겪었던 횡포와 상식 이하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그 회사에는 정작 노조가 없었다. 게다가 모회사인 언론사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절반 정도의 월급만 받는 사람이 수도룩했다. 진보 언론으로 자처하는 곳에서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엄연한 현실에 놀랐다.

사기업이 아닌 공공 영역에서도 이런 차별은 비일비재하다. **도 교육청에서 일용잡급직으로 채용된 영양사들은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용잡급이라는 이유로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또한 방학 기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 퇴직금 산정에도 방학 기간이 빠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는 영

양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었으며, 업무는 같지만 다른 다양한 업무도 하고 각종 사안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일용잡급의 영양사 역시 영양사 자격을 취득했고, 근거 규정이나 기본 임무도 같았다. 그럼에도 일용잡급직인 영양사의 연봉은 약 1000만원으로 식품위생직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영양사의 초임 호봉 1600여만원의 60%에 지나지 않았고, 방학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우체국 집배원들 사이에서도 차별은 존재했다. **상시위탁 집배원과 우체국 택배원은 같은 비정규직이고 업무가 유사한데도, 상시위탁 집배원에게만 상여금과 맞춤형 복지 혜택이 주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규정에 상여금 지급 대상이 공무원·상시위탁집배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해명했다. 우체국 택배원은 우체국 택배 접수 등 소포 접수 관련 업무를 하고, 상시위탁 집배원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상시위탁 집배원과 우체국 택배원은 둘 다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점, 직접 고객과 접하며 육체적인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상시위탁 집배원은 배달 업무를 주로 하고, 우체국 택배원은 고객 집을 방문해 택배물 접수를 주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 제도는 직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

시하는 복지 제도로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체국 택배원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유정**

영어, 미국 국적 한국인은 못하나

영어가 우리나라 교육의 화두가 된 지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요즘 처럼 극성인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영어 몰입 교육이다 뭐다 해서 원어민 강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학력, 발음, 성격 등 객관적인 지표가 우수한 흑인 미국인보다, 모든 게 떨어지더라도 백인 원어민 강사를 더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원에서도 백인이면 신원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채용하고, 덕분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와 버젓이 원어민 강사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수업 태도가 엉망인데도 한국인을 비하하는데도 여전히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백인들도 있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도 오로지 피부색으로 원어민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다.

억울한 건 흑인뿐만이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 출생해 생후 1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 남자는 한국에서 약 10개월간 영어마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동안 원어민 영어강사의 임금이 아닌 내국인 영

어강사의 임금을 받았다. 분명히 국적이 미국인데도 핏줄이 한국인이라는 이유에서 말이다.

이 영어마을에는 내국인 강사 21명, 원어민 강사 21명이 일하고 있는데, 원어민 강사는 내국인 강사에 비해 연 700만~1000만원 정도 임금을 더 받는다. 사전적으로 ‘원어민(原語民)’이란 해당 국어를 모국



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장 과정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남자는 당연히 원어민임에도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물론 계약 당시 그가 내국인 강사 월급을 받겠다고 수긍했다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정을 모르고, 강사 구분 및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맺은 근로계약이 합리적으로 체결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했던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해 성차별이나 나이 차별 등 다른 차별보다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도 전체 인구의 2%를 넘으며, 결혼하는 10쌍의 부부 중 1쌍이 국제결혼이다. 말로만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영어에 아이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믿는 부모들은 영어가 백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상식부터 깨우치면 좋겠다.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누구나 영어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원어민이라고 한다. 인종과 언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종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이유정**

5. 차별이 직장에서 날 내쫓는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유도 다양하다.

결혼했다고 내 쫓고, 임신했다고 재계약해주지 않는다.

20대를 넘기면 도우미도 될 수 없다.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별정직이라고 먼저 정년퇴직하란다.

50세 이상 청소원을,

65세 넘는 경비원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직장에서 차별당해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은 집이 아니다.

존재감, 생계, 미래가 흔들리는 사회의 뒤뜰로 내몰린다.



도우미는 20대 여성만 할 수 있어요?



내게는 네 살, 여섯 살의 어린 조카들이 있다. 그래서 일 년에 한두 번쯤은 놀이공원이나 어린이 대상 전시장을 찾게 된다. 매년 놀이공원이나 전시장을 가보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 매표소다. 그런데 매표소 직원은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이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매표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공원이나 전시관 안내도 마찬가지다. 20대쯤 되었을까 싶은 젊은 여성 안내원들이 유니폼을 예쁘게 차려입고 경쾌하고 맑은 목소리로 전시관이나 공원 구석구석을 설명한다. 역시 나이 좀 있겠다 싶은 안내원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공원 매표원이나 안내원들이 젊은 여성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 공원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던**

조혜실 씨는 나이가 서른밖에 되지 않았는데 퇴직해야 했다. 공원 측은 다른 특수직의 경우 정년을 57세로 하고 있지만 전원이 여성인 도우미의 정년은 30세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원 측은 소속 도우미는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함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정년을 30세로 규정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안내하고 관람객을 전시장으로 이끌고 전시물을 정리하는 데 30세 이상 여성은 부적격하다는 뜻이다.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공원 안내와 전시물 설명, 정리 등의 업무는 굳이 30세 이하 여성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도우미 일은 어떤 전문성이나 연령, 성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원 측은 도우미들이 퇴직한 후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정규 직원들을 순환시키면서 해당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도우미 업무가 성별이나 나이와 그다지 큰 연관관계가 없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공원이 성별에 따라 또 30세라는 나이 제한을 두고 도우미를 채용하고 퇴직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우미가 젊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다.

전시장이나 공공 공원의 도우미들도 성별이나 나이에 구애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이 지긋한 분들의 푸근한 설명과 안내를 받는다면? 글쎄, 그것이 과연 관람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_이수진**

파산신청 했다고 쫓아내는 직장

몇 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SF 영화가 있다. SF 소설의 대가 필립 K 디크의 소설이 원작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것이다. 영화의 기본 축을 이루는 것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경찰이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한다는 내용이다.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또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 체포당한다.

그런데 최근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다. 이정숙 씨는 얼마 전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하다가 파산신청자라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카드사에선 이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해 계약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모집인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 모집인은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 모집인이 파산신청자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명의 도용이나 대필 등 카드 모집 질서를 해칠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서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불합리하다. 무엇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카드 모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씨는 파산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을 뿐이지 완전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파산신청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명의 도용이나 대필을 할 우려가 더 크다는 주장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막연한 추측을 갖고 이씨의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명의도용을 하지도 않았고, 대필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하나만으로 이씨를 해고한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어쩌면 어떤 이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높다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카드사가 파산신청자를 해고하는 건 '미리 대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잘한 일이 아니냐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다. 범죄자는 법에 따라 심판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에 의해 손해를 당한 경우는 재판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며 불합리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_이수진

별정직은 정년도 먼저 챙겨드립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전국노래자랑>이나 <스타킹>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노인들을 보면 도무지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예순 좀 넘으셨나 하면 일흔을 훌쩍 넘었다 하고, 또 일흔쯤 되셨나 하면 내일모레 팔순이라며 수줍게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 노인들을 보면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당연히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의 노인들을 보면, 확실히 정해놓은 은퇴 나이라는 것이 무색할 따름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규정해놓은 은퇴 시기가 과연 실제로 은퇴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아직 일할 능력도 있고 의욕도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해야 한다는 것만 해도 억울할 지경인데 직종이 다르고 직급이 낮다고 남들보다 일찍 은퇴해야 한다면, 그건 더더욱 속상한 일이다. 김치수 씨도 어느 날 그런 일을 겪었다.

김씨는 오랫동안 한 공기업에서 별정직 근로자로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공기업의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달랐다. 일반 직원들은 58세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지만 별정직은 그보다 2년이나 이른 56세가 정년이였다.

이 공기업은 김씨를 자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수행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2년 이르게 설정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직원들과 동일하게 58세로 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별정직의 이른 퇴직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별정직의 직무 내용, 업무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직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원에 비해 2년이나 일찍 정년퇴직해야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차이는 채용 기준이나 처우에서 차이를 두는 게 마땅하다. 인건비 절감이라는 조직 목표를 위해 별정직 6직급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다.

신분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을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정년 차별 같은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옷이 아닌 만큼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수진**

일 잘해도 임신하면 재계약 없다

최근 텔레비전에서는 아주 참신하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광고 한 편이 방송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제작한 ‘마더하세요’가 그것이다. 광고는 육아휴직, 임신부에 대한 회사의 배려, 육아 여성을 위한 정시 퇴근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나가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더하세요’ 광고대로라면 저출산 문제쯤은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마더하세요’ 광고를 제작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기업이 임신한 직장 여성에 대해 여전히 편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임신한 여성이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을 꺼리는 회사가 많다는 얘기다.

한 금융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약 2년 6개월간 근무했던 김해숙 씨가 그런 예다. 김씨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만기가 되자 재계약하지 못하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유를 물었다. 회사는 품위 유지 관련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그런데 품위 유지 관련 사안이란 게

참 모호했다. 김씨는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김씨는 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받기 전 임신 7~8개월 상태였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올 때다.

김씨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기까지만 한 번도 회사로부터 근무 성적이나 근무 태도에 관해 지적을 당한 적이 없다. 그녀는 근무하는 동안 흠잡을 데 없이 업무를 처리했고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느꼈다. 임신 이외에는 김씨가 재계약을 거부당할 타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김씨에 대한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부당하다는 것은 남자 사원과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이 회사에는 김씨와 같은 해 입사한 시간제 업무보조원인 남자 사원이 있었는데, 김씨가 재계약을 거부당한 반면 그는 일반적으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다. 즉, 회사는 임신부의 걸모습을 두고 품위유지 관련 사안이라고 예들러 표현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 문화의 큰 흐름은 가족 친화다. 가족과 회사가 하나라는 인식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는 시대다. 진정한 가족 친화 기업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여성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사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수진**

결혼하면 일하기 어렵지 않나?

얼마 전, 여행사를 운영하는 동생으로부터 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신혼여행 상품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결혼을 가로막는 장애는 전세 보증금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한 방송사에 다니던 박은혜 씨도 그런 경우를 당했다.

20대 후반의 박씨는 한 방송사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해 5년을 일했다. 그러나 그녀는 입사 6년째 되던 해 결혼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은혜 씨는 팀장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팀장님,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결혼하고 임신하면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프리랜서 제도도 있으니깐 필요한 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봐. 물론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은혜 씨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프리랜서보다는 계약직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은혜 씨는 팀장의 프리랜서 제안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프리랜서는 출퇴근의 자유로움이 이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결혼하게 되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도 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출연료로는 그녀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퇴직을 결정해야 했다.

결혼 후, 은혜 씨는 프리랜서로 5주간 방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끝내 방송 출연을 포기하고 말았다.

방송사는 박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방송에 참여하고 방송 출연을 포기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한 만큼 회사가 결혼 후 퇴사를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원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계약직을 포기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를 일부러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더군다나 당시 이 방송사에는 계약직 가운데 기혼 여성이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 대다수가 여성이 결혼하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는 은혜 씨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게 하는 관행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고용될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

다. 결혼한 여성은 안 되고, 결혼한 남성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인재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능력 있는 여성을 결혼했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업 최대의 실수가 아닐까 싶다. **이수진**

재임용, 외국인 교수는 NO

요즘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말 중 하나는 아마도 다문화일 것이다. 국내로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내국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일이 많아지면서, 또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기업은 다문화를 활용해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고,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해마다 설날이 되면 텔레비전에선 외국인들의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젊은 외국 여성들이 출연해 한국 사회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누가 봐도 분명한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외국인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추 교수 역시 그런 경우를 겪어야 했다. 추씨는 한 대학교 중국지역학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과정을 거쳐 전임 조교수로 승진했다. 그는 중국인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한국에서 성공한 교

수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한국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것만 같아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추 교수는 계약이 만료 되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추 교수가 계약직이었으며 추 교수를 조교수로 승진시킨 것은 계약 기간 동안의 예우 차원이었지 계약제를 기간임용제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교원 인사규정에도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학의 교원 인사규정에는 계약제 조교수나 계약제 전임강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또 한국인 조교수와 외국인 조교수의 권한과 의무에 차이가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해당 대학에서는 추 교수가 계약제 교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교원 인사규정에는 계약제 조교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 교수의 조교수 승진 심사 및 발령장 어디에도 계약제 교수임을 나타낸 부분이 없었다.

따라서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추 교수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계약제로 임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는 곧 추 교수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대했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추 교수가 만약 내국인이었다면 대학은 추 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한 후 추 교수를 재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추 교수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제였다는 점을 핑계로 내세우며 추씨를

계약해지했다.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를 운운하는 이때, 대학이 외국인 교수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다. 교수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외국인 교수가 오려고 할까. 한국이 글로벌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외국인 교수를 차별하는 일부터 없어야 할 것이다. **이수진**

50세 이상 청소원은 부담스러워해요

실업대란 시대라 대학 졸업생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도 많이 모자란다. 예전에야 환갑이 넘으면 당연히 퇴직해서 쉬엄 쉬엄 쉬면서 인생 후반기를 정리했지만, 요즘 환갑은 아직 살아야 할 날이 20~30년은 더 남은 중년일 뿐이다. 그렇지만 일자리는 모자라 요즘은 청소 용역 업체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용역 업체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친구 어머니가 계신다. 어느 날 “늙기도 서러운데, 요즘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을 더 반긴다”며 푸념하셨다고 한다. 이야기인즉슨 친구 어머니가 한 금융기관에서 청소 용역을 받아 청소를 했는데, 50세가 넘은 세 사람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중 한 명이 어머니이셨다. 회사에 항의했더니 오히려 회사에서도 금융기관에 벌금을 냈다면서 억울해하더라는 것이다. 처음 금융기관과 어머니 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50세 이하의 청소원을 채용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규정을 어겼으니 인건비를 주기는커녕 벌금을 받아야겠다는 논리였다.

원래 금융기관은 이 회사와 10여 년간 계약을 맺어왔고, 예전에는

55~58세까지도 청소원으로 일했으나 최근 직원들이 50대 이상의 청소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2년 전에 계약을 갱신할 때 상한 연령을 50세로 제한했다. 이런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굳이 3명분의 인건비를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청소 용역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7세이고, 60대가 무려 43.3%를 차지하며, 50대가 41.3%를 차지한다. 전체 청소 용역 인구 중 50세 이상이 8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통계 자료에 비추어보면 청소는 50세가 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다. 또한 계약할 때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50세 이하로 정한다고 했지만, 통계나 근거 자료가 없었고, 담당자의 말뿐이었다.

금융기관에서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 지금은 돈을 줄 수 없고, 다음 계약에서는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해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였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고, 회사가 낸 벌금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지 오래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단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50세 이상은 부담스럽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이 50이 될 텐데, 왜 그런 미래를 헤아려보지 않는 걸까? 젊을 때 자신의 늙은 나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을 텐데... **이유정**

나이 많으면 자원봉사도 못 한다

한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닌 적이 있는데 한 달 내내 거절만 당했다. 매장의 점장과 매니저들이 나를 탈락시킬 때 했던 말은 거의 비슷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30대 중반인 나는 내가 지원한 일을 하기에 나이가 많다는 뜻인 줄 알았고, 건강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어느 점장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 말이 ‘자신들이 아랫사람으로 부리기에 내 나이가 많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다. 나를 뽑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나에게 일을 가르쳐야 하는데 대부분 20대 초반인 선배들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후배가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일흔 살이던 민씨 할아버지도 나처럼 하고 싶은 일을 나이 때문에 못 한 적이 있다. 민씨 할아버지는 ‘제5회 광주 비엔날레’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행사 관계자는 ‘고령자는 통역 자원봉사자로서 부적절하다’며 민씨 할아버지를 탈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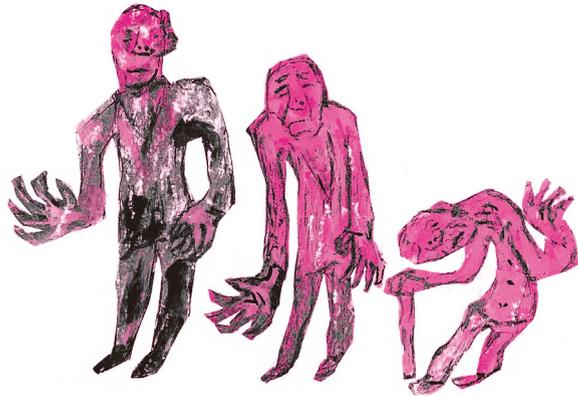
할아버지의 항의에 비엔날레 측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1차 서류심

사에서 탈락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당시 서류심사 채점 기준을 보면 ‘30세 미만은 상(30점), 31세에서 45세는 중(25점), 45세 이상은 하(20점)’라는 연령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나이에 따른 차등 점수를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류심사 총 80점에 연령평가 점수 30점은, 당락을 결정하고도 남을 만한 높은 비중이었다. 면접도 하기 전에 점수를 10점이나 깎인 민씨 할아버지가 합격할 확률은 과연 얼마였을까?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23명 중 20명이 28세 이하였다는 결과로 설명이 될 것 같다.

일흔 살이 적은 나이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주변의 도움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씨 할아버지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러 올 정도로 건강했고, 한 번의 탈락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도전할 정도로 의지도 강했다. 자원봉사의 원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대학 진학이나 학점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일부 학생들보다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남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온 민씨 할아버지가 훨씬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니 큰일이라고들 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할 사람만 늘기 때문이라는 거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많다.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는 연령평가표를 근거로 그들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건 너무 바보 같고 우습지 않은가? 고령자 우대는 지하철 자리 양보할 때나 했으면 좋겠다. **이영화**

65세 넘은 경비원은 모두 무능합니다



푸른 잔디가 마당에 깔려 있는 하얀 지붕의 이층집에 사는 것은 어릴 적 소망일 뿐이다. 나는 잿빛 도시 속 닭장이라 비유되는 아파트에 산다. 철새처럼 옮겨 다니긴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등지의 원형은 바로 아파트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아저씨도 내 일상에 자리한다. 야근하고 택시를 타고 오면 밤 12시에도 야간 순찰을 도는 아저씨들 덕분에 안심했다. 아침에는 입주자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을 정리하기 바쁘고, 하루 종일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한다. 또는 입주자들의 불편함을 미리 알고 대처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아저씨의 모습이다.

우리 단지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곤 한다. 한가롭게만 보이는 경비원들도 입주민들과 갈등을 조금씩 겪게 마련이다. 다른 동을 책임지는 경비원은 낮술에 취해 밖에 앉아 있다가 입주민에게 시비를 걸었다. 다음 날 바로 그 아저씨는 해고조치되었다.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동 아저씨들처럼 언제나 낮에는 바지런하게, 밤에는 철두철미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입주민을 지켜주는 분들도 있다. 그들의 연세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나이로 능력을 판단할 수도 없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지난해 김모 씨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경비용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했다. 김씨를 포함해 만 65세를 초과한 경비원 7명은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이 근무하면서 즐거나 해 경비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지 내에서 절도·차량 방화 및 훼손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졌다고 얘기했다. 이에 경비원들의 1일 휴게시간을 기존 9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을 인상해서라도 경비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경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입주민들의 요구로 경비원 교체가 필요했기에,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 경비원의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목적은 타당했을지라도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경

비 본연의 업무 수행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 경비원이 책임감 있게 경비 업무를 수행해줄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보다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절도 외의 사건들은 경비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도 위배된다.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경비 모집 쪽지가 붙어 있었다. '상가 경비 구함 나이 55세 미만'이라고. 지금은 100세 시대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이 뒷받침되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나이 55세 미만'이라는 글귀 때문에 씩씩했다.

오래전 유행한 광고가 생각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카피에 많은 이가 열광했다. 열광만 했을 뿐, 우리는 아직도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능한다. 낯선 곳,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궁금한 게 있다. 바로 나이다. 외국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와도 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로 서열을 정하고 형, 아우를 논하지 말고 제발 인간에 대해 궁금해하면 좋겠다. 나이가 아닌 오롯한 '나'를 서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서미현**

맥가이버 통장도 두 손 든 나이 제한

오래전, 서울 변두리에서 끝자락으로 이사를 갔다. 지금은 변두리라는 개념이 모호해졌지만 예전 서울은 사대문 안이 시내였고, 그 밖은 변두리였다. 그 서울 끝자락 변두리에 통장님 한 분이 계셨다. 시장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9시 뉴스 앵커보다 소식에 밝았으며 <무한도전> 멤버들보다 더 힘들고 굶은 일에 도전했던 통장님. 바로 우리 할아버지는 통장님이었다.

할아버지는 잔정이 많거나 자상한 분은 아니었지만 어린 내게는 비범한 재주를 가진, 초능력자 같은 분이셨다. 맥가이버와 슈퍼맨을 합쳐놓은 정도였다. 할아버지 책상에는 없는 게 없었다. 지금 떠올리면 고물들이지만 할아버지의 손재주로 그것들은 새 생명을 얻어 빛을 발했다. 세상의 모든 볼트와 너트 나사가 있고, 필요한 모든 공구가 가지런히 놓인 책상. 그 위에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모아 온 살부러진 우산을 고치고, 앞집 김씨 할아버지가 맡긴 라디오를 수선하고, 빨간 대문 집의 쥐가 먹이만 먹고 도망간다는 쥐덫을 고쳐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바로 통장! 할아버지의 주 무대는 삼거리 조

그만 점방이었다. 복덕방에서 부동산 업무와 동네 통장 일을 동시에 보았다. 오후에는 막걸리 한 사발씩 걸치고 찾아온 친구 분들 장기판에 혼수를 두고, 선거철이 되면 큰 바퀴 자전거를 쉼~하고 몰고 나가곤 하셨다.

일흔 살 가까이 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동네 반장 생활을 좀 하다가 통장을 맡아 열심히 일하셨다. 깡마른 체격이었지만 다부졌다. 청년 부럽지 않을 만큼 멋진 몸매,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 곳곳을 누비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와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셨다.

요즘엔 실버 시대라고 말하기만 할 뿐 정작 어르신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생기고 있다. **두어 해 전 66세 여성인 강씨는 통장 모집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했다. 통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령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구청에서는 통장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두는 이유가 각종 통지서를 전달하고 관내 시설물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고령일 경우 상해의 위험과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보면 통장 업무의 대부분이 각 반장을 통해서 이뤄진다. 통장의 업무는 회의 참여 등 대부분 노동 강도가 과중하지 않고 따라서 위축 나이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만약 내 할아버지께서 그 오래전 정년퇴직 후 동네의 통·반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삼거리 복덕방에 활기가 넘쳤을까. 할아버지의 얼굴에 유쾌한 웃음이 가득했을까. 손녀의 마음에 열심히 생활을 꾸리면서 봉사하셨던 모습으로 새겨졌을까.

최근엔 통·이장의 나이 제한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변화의 소식도 들린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통장의 나이 상한선을 없앨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아닌,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지금은 추억 속에 있는 할아버지. 내 유년 시절 속 단 하나의 통장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리 맥가이버 할아버지 같은 슈퍼맨 통장님과 원더우먼 통장님, 통장의 달인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 한두 가지씩은 자라날 수 있기를... **서미현**

관광해설사, 나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팔순이 되는 시아버지는 요즘 외국어 공부 삼매경에 빠져 계신다. 몇 년 전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영어를 배우시더니, 얼마 전부터는 일본어, 중국어 공부까지 시작하셨다. 언어를 처음 배운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매일같이 듣고 쓰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영어와 일본어로 외국인과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다. 어디 써먹을 것도 아니면서 어찌 그리 열심이신지 모른다. 한번은 외국어를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소일거리를 하면 공부한 보람이 더 클 것 같아 지자체 행사에서 외국어 자원봉사를 하면 어떨겠느냐며 슬쩍 여쭙어보았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노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대하지 않으셨다.

시아버지의 염려처럼 실제로 노인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조모 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조씨는 66세이던 2010년에 대전광역시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자격이 6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문화관광해설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는 해설사의 연령을 70세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해설사 활동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는 1~2년의 현장 경력을 쌓아야 원활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수의 해설사가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했다. 65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70세 활동 연령 상한 때문에 1~2년 활동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해설사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이런 나이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보다 활동 연령을 더 높게 정할 수 있고, 신규 해설사가 꼭 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고령사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해소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높이고 기회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부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마땅히 할 일이지만 노인 정책을 복지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건강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노인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일하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힘썼으면 좋겠다. **이연희**

6. 경제생활하며 차별을 사다

경제 활동은 은행 창구에서부터 막힌다.
살림하는 남성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외국인에게는 신용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보안카드를 남에게 맡겨야 하고,
장애인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회의감이 먼저 든다.
매점을 운영하려 해도 가족이 없으면 지원도 안 된다.
똑같은 얼굴 상처에도 남성은 여성보다 보상금을 적게 받는다.
경제활동은 생존을 위해서든 자기성취를 위해서든 필요하다.
그 활동을 막아서는 차별이 가장 값싸다.



살림하는 남자의 신용

어느 일요일, 내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 40대 후반의 남자 한 명이 찾아왔다. 남자는 교회가 마음에 들었는지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 돌아가면서 점심을 준비해서 같이 먹는다. 그 남자는 점심도 먹고 얘기도 나누다가 돌아갔다. 같이 밥을 먹으며 조금 친해진 내가 가족관계를 물어보았다. 남자는 아내와 딸이 있는데 딸은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딸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가르쳐서 좋은 학교에 보냈다고 자랑하며 뿌듯해했다.

남자는 말문이 트이자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IMF 외환위기 때 둘 중 하나는 그만두어야 했다. 남자는 자신이 그만둘 테니 아내에게 계속 직장에 다니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아내가 저보다 일을 더 좋아하고 더 유능해서요”라고 했다. 남자는 그 뒤 육아와 살림을 맡았다. 아내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여전히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자신의 아내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동안 이 남자는 살림솜씨가 늘었다. 어느 주일에 그가 마련한 점심을 먹고 우리는 그의 탁월한 음식솜씨

에 모두 놀랐다.

이 남자가 특이한 사례는 아닌 것 같다.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쇼핑 카트를 미는 남자를 보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여전히 전업주부가 많지만 살림하는 남자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자 전업주부가 15만 6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많아졌다고 한다. 남자들보다 능력 있고 소득이 높은 전문직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남자라도 적성이 맞으면 집안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한 은행에서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 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서 남성 가사전업자의 신용카드 발급은 거절했다. 그 은행은 배우자가 결제 능력이 있더라도



남자는 주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단순 무직자와 가사전업자의 객관적 구분이 곤란하고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가사전업을 명목으로 결제 능력이 없는 남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경영상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은행에서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를 찾은 그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고용의 유동성 증가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 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실제 가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는 여성 가사전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 능력이 확인되는 한 실제 가사 수행 여부가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다.

이미 여러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배우자 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다. 남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발급 심사 기준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남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을까? **김성혜**

내 은행보안카드 좀 봐주세요

“쌤! 이것 좀 봐줘요.”

시각장애 2급인 한 직장 동료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할 때면 옆자리에 앉은 나에게 지갑을 건네며 보안카드를 찾아 숫자를 읽어달란다. 그러마 하고, 지갑을 받아 들고서 괜히 애가 나는 믿나 하며 흐뭇해졌다가, 매사에 신중하고 깐깐하기 그지없는 동료가 자신의 신용이 담긴 지갑을 건넬 때 그 마음이 오죽하랴 싶어 기분 좋은 모양새를 낼 수 없다. 요즘처럼 명의 도용이니 해킹이니 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면 더욱 그렇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금융거래나 업무상으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찾아달라고 하거나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장애를 고려한 신분증이 제작되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두 명이 각각 다른 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두 장애인은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이에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발급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A은행이었다.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고, 발급 계획도 없다고 했다.

두 은행을 제외한 다른 몇몇 은행에서는 이미 시각장애인 개인 및 법인 고객에 대해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었다.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없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등을 이유로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은행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각장애인은 신분증을 사용할 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과 규격이 같아서 종종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종종 시각장애인은 할 수 없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해놓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혹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는 기술을 보면 종종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딱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행정 당국은 장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알아서 지키라는 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식별 가능한 신분증을 제작해주는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증과 금융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마음 편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신용카드에 본인 이름 새기듯이, 약간의 점자 표시 등으로 개선된다면, 너와 나의 신뢰까지 들먹이며 불안해할 일은 사라질 것이다. **우지은**

문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없나요?

가끔 낯선 번호가 휴대전화에 뜨면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게 된다. 역시나 상품 설명과 함께 “고객님 이번에 특별히 고객님을 위한 상품이 나왔어요”라며 보험 가입을 권한다.

“괜찮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아 고객님, 이런 상품은 흔치 않아요. 혼자 알고 있기 너무 가까운 정보라 특별히 선정된 고객님께 권해드립니다.”

이내 다 듣고 “저는 장애4급이고요, 제 남편은 장애 1급인데, 가능할까요?” 하면 “아,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며 서둘러 끊어버린다. 물론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었다. 너무 귀찮고 바쁠 때면, “저 장애1급입니다” 하면 곧바로 끊긴다.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내 장애가 그렇게 이용되는 상황이 유쾌할 리 없다. 생명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이래저래 간간하게 물으니 실제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많은 장애인이 보험 회사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만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도 있긴 하다. 몇 년 전 나도 그런 보험을 하나

들어두었다. 보험설계사는 원래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만든 상품이라고 가입을 권유했다. 마침 마땅히 들어둔 보험도 없으니 그러마 하고 약관이나 조건을 보는데, 이 보험 사망지급금이 2000만원이다. 웬지 내 몸값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 씩씩했다.

이렇듯 장애인 전용 보험을 들어도 보상액이 낮게 책정되어서 보험 상품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민간 보험에 눈을 돌리지만, 민간 보험은 가입조차 쉽지 않다. 또 보험 가입이 되었다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때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주는 일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어떤 이는 상해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또 어느 부모는 자녀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세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당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부의 주된 근거는 장애등급이다. 피가입자가 상법에 명시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는 자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결국 명확하지 못한 개념에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보험 가입 자체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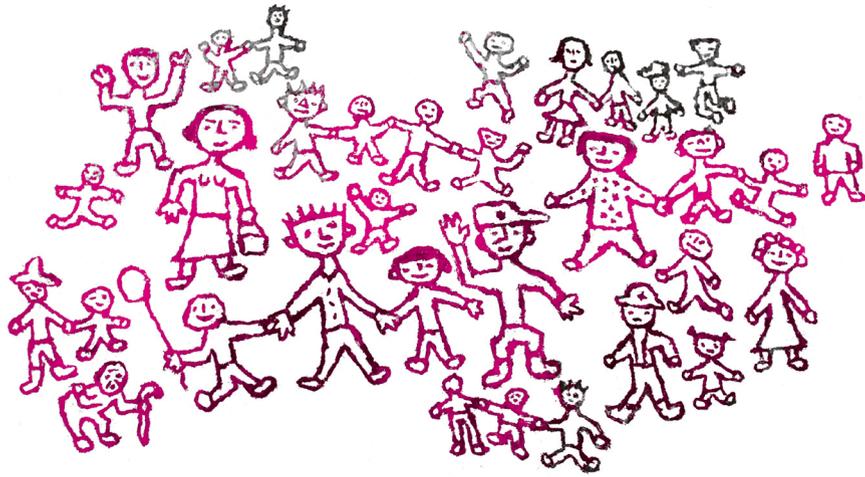
장애등급이 위험성과 결부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객관적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애인은 무조건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보험사 직원들의 차별적인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좀 더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래저래 우리 장애인은 서럽다. 밖을 나가자니 집 앞 문턱에 걸리고 공부를 하자니 교실 올라가는 계단에 걸려 넘어진다. 직장을 얻고자 하면 높은 잣대에 걸러지며, 불안한 미래를 염려해 보험 하나 들자니 보험 약관 갖고 너무 따지고 들어서 결국 되돌아와야 한다. 장애인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보험 없을까? **우지은**

외국인은 신용보증 안 돼요

버스 타고 외출할 때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자주 만나게 된다. 얼마 전에는 한 외국인이 능숙한 솜씨로 휴대전화 문자를 한글로 보내는 것을 보았다. 우리 동네만 해도 같은 시간에 산책하러 나갈 때면 꼭 보게 되는 외국인이 서너 명은 된다. 농촌은 동남아에서 지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촌에서 외국인 여성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는 외국인 주부가 부녀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화제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다. 나 어릴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한 풍경이다.

어린 시절에는 텔레비전의 영화에서나 외국인을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더 이상 화젯거리가 되지 않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했다. 초등학교생인 딸에게 혹 학교에서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는지 물어보았다. 딸은 선생님이 이제 '민족보다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했다며 나한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다.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너무 미흡했다. 은행들의 관행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외국인은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모기지 보험은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은행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중 은행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보험 가입 대상 채무자 요건에 맞는 고객에 한해 모기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 보증보험사는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신용 정보가 부

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했다. 외국인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보증보험사는 내국인도 신용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인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증보험에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 신용정보사는 2010년 6월 21만여 명의 외국인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이라 해도 개별적으로 신용 평가 및 모기지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지 두어 해가 지난 지금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사라졌다.

외국인이 텔레비전에서만 존재하던 때는 지났다. 정겨운 고향에는 외국인 여성이 있고 동네 학교나 학원에는 외국인 선생님이 있다. 공장에는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마트에는 장보는 외국인 소비자가 있다. 김성혜

가족 없으면 매점도 운영 못 한다

진신 화상으로 1급 장애를 갖게 된 고씨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애가 심해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한국마사회의 매점 임대 광고를 접하게 되었다. 고씨는 이거다 싶었다.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만 매점 운영권을 따게 되면 일하는 사람을 두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고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청 서류를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신청자가 직접 운영하기 힘든 경우 매점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배우자의 임차 신청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없는 고씨는 운영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격 미달인 셈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내에 있는 매점·경마예상지판매소를 국가유공자나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세대주 중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이를 임대해왔다.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인의 대부분이 장애와 고령을 이유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한국마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의 훼손을 막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친족동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와 달리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타 공공단체에서는 불법 전대 행위를 막기 위해 친족의 임차 신청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제3자 위탁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내놓은 전대행위 적발 사례 자료에 의하면 친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불법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보더라도 친족 동의 제도가 불법 전대를 예방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한국마사회는 고객편익시설 임대 시 직접운영이 불가능한 신청자들에게 친족의 임차 신청 동의를 요구해 고씨처럼 직접 운영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 노인들을 차별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특히 그러한 한국마사회의 요구는 운영을 도

와줄 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 서비스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위였다.

한국마사회로서는 제도를 보완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선의의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배려가 아쉽다. **이연희**

남자의 피부도 소중하다

나이가 드니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다. 자고 일어나면 주름이 더 깊어지고 새로운 잡티가 생겨난다. 피부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혀를 끌끌 찼다.

“알고 있냐? 네 피부, 심각하다. 한번 와라.”

큰 마음 먹고 친구가 있는 피부과를 찾았다. 미모는 권력이고 피부미인이 진짜 미인이라고 하더니,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인지 만족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부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피부에 좋다는 무슨 레이저 시술을 해주며 친구가 말했다.

“들러봐라. 40, 50대 남자도 많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검버섯 빼러 와. 초등학생 아들 얼굴에 점 좀 빼달라고 온 엄마도 있더라. 물론 다 크면 오라고 돌려보냈지.”

피부과에 좀 오래 있다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부 관리에 나선 것처럼 보였다.

사실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여겼던 피부 관리에 남성들이 발을 들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언젠가부터 화장품 가게에는 남성

용 화장품 코너가 따로 생겼고 화장하는 남자도 낫설지 않다. 그렇다 보니 흉터에 대해서라면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가 더없이 민감하다.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의 외모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얼굴 흉터가 남았을 때 겪는 정신적 상처에는 남녀 차이도 없었다. 얼굴 흉터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

하지만 불과 7~8년 전만 해도 법은 이런 흐름을 못 따라갔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교통사고를 겪은 후 얼굴에 흉터가 남는 후유장애로 장애등급 제12급 판정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관련 법을 보니 자신과 동일한 흉터의 여성은 신체장애가 7급으로 인정돼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실제 관련 법에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이가 여성이면 7급, 남성이면 12급으로 판정했고, ‘외모에 흉터가 남은’이가 여성이면 12급, 남성이면 14급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규정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흉터를 두고 남녀의 등급을 달리 정할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산재 및 의료 전문의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 법은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때의 사회통념을 40년 남짓 흐른 현대사회에 반영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다른 법들에서는 이미 남녀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이런 남녀 차별적 통념이 반영된 이 규정은 개정되었다.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상처로 인해 한 사람이 받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정해질 듯싶다. **김성혜**

경력 인정 못 받는 운전의 달인

〈생활의 달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이 방송을 볼 때마다 놀란다. 짬뽕 만들기, 배냇머리 미용, 파라솔 설치, 워터파크 청소, 성형 메이크업, 취사병 달인 등 달인은 도처에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다. 영화 〈아라한 장풍대작전〉을 보면 달인은 곧 도인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영화는 고층 빌딩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유리를 닦는 청소부, 음식 쟁반 네댓 개를 손도 대지 않고 머리에 이고 가는 배달 아줌마들이 사실은 도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활도인들과 도시에 조용히 숨어 지내며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세월로 보자면 운전의 달인이고 운전으로 도를 닦은 생활도인이다. 그는 약 16년 동안 화물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했다. 하지만 달인의 경지에 다다른 운전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북의 한 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에서 택시 경력자를 지나치게 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군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발급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을 보면 최상위와 차상위 순위인 택시 운전 경

력자에게 면허가 집중되었다. 그 결과 택시 이외의 운전 경력자들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아무리 길더라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기회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군에서 일방적으로 택시 운전 경력자들만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해 면허를 발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택시 운전 경력이 화물자동차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에 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와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다른 차종의 운전자에 비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택시 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의 요건으로 택시 운전 경력 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 경력도 인정하고 있다. 물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해당 관할 관청의 재량 사항이지만 관할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이 규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타당했다. 그리고 해당 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게 합리적일 듯싶다.

때론 누군가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다보면 모르는 사이 또 누군가를 차별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관할 관청은 택시기사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만 집중하느라 오랫동안 운전으로 밥 먹고 살아온 다른 운전자들의 경력을 외면했다. 이는 10년이 넘도록 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숙련도, 자신감을 과소평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성혜**

7. 시설 이용, 차별이 많다

차별의 실체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도 나타난다.
마을버스엔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안내판이 없고,
미혼자는 전원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임대아파트에도 입주할 수 없다.
모자보호시설이라는데 공동식당이 운영되지 않고,
투표를 제대로 하려면 사전답사를 가야하는 게 장애인이다.
시설은 열려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배제와 구별로 문을 닫는다.



미혼은 전원주택 못 짓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서른여덟 살 수영 씨가 언제부턴가 품어온 꿈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사는 삶이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수영 씨는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의 전원주택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게 되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준비하던 수영 씨는 해당 시청으로부터 낙찰받은 곳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함께 살지 않으면 전용허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고심 끝에 낙찰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경매할 당시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2200만원도 몰수당했다.

환경부는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인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었다. 현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고 위장 전입을 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역 안에

오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 허가를 신청하려면 환경부가 정해놓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시청이 환경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라는 규정을 들어 수영 씨에게 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시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개념을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본인의 미혼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간주하되, 민법에 의해 법정 분가된 비속만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통상적으로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수영 씨처럼 단독 세대인 경우는 수영 씨가 세대주인 동시에 세대원 전원인 된다. 그런데도 환경부나 해당 시청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부모와 형제까지도 같은 세대원으로



여겨 수영 씨가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특히 수영 씨는 이미 6년 전부터 주민등록상으로 분가에서 분가했고 실제로 부모·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자립한 상황이었다. 수영 씨가 건축하려는 시설의 용도도 주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될 우려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영 씨는 시청으로부터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주택 부지의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입찰을 포기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독립해 개별 세대를 이루고 사는 미혼자가 많다. 그런데도 해당 시청은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집행하기보다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 번거롭고 품이 많이 들더라도 실제 확인을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바라는 건 무리한 요구인지 궁금하다. **이연희**

사회보험이 증명할 수 없는 것

즐거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3일>이 있다. 사소해서 지나치기 쉽거나 혹은 일반인이 근접하기 힘든 특별한 공간의 3일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다. 풍경을 스케치하듯 ‘어떤 곳’의 일상을 보여주는 방식은 담담하지만, 카메라가 지나간 그곳은 어떤 특별함으로 다가오곤 한다.

‘스무 살의 상경기- 금남의 아파트 72시간’ 편도 그랬다. 서울시에 서 운영하는 미혼여성 임대아파트의 일상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사는 일하는 미혼여성들의 삶이 고스란히 그려졌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들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 혼자인 생활에 익숙지 않아 우울증을 겪는 사람, 4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쓰면서 악착같이 저축하는 사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젊은 한때를 함께 보내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타인과 한방을 써야 하고, 밤 12시 30분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월 2만2000원에서 4만 4000원이라는 저렴한 임차료 때문에 이곳을 찾는 미혼여성들의 발길

이 계속되고 있었다.

소정 씨의 경우도 그랬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임대아파트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입주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소정 씨가 일하는 곳은 영세 사업장이라 소정 씨가 일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소정 씨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해당 시는 원칙을 강조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고, 비가입자의 입주를 허용해주면 법규 준수를 유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보험 가입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허위 서류로 입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의 주장처럼 근로자라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을 할 수 없고,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에서도 개인이 가입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해당 시가 소정 씨와 같은 사회보험 비가입자 모두를 가입 회피자로 보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뿐더

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주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가 허위 서류에 의한 입주를 예방하려고 했다면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를 제한하기보다는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게 선행됐어야 한다. **이연희**

마을버스엔 장애인이 타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에서 농통역사로 일하는 한 청각장애인은 본인이 겪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서울에서 1박 2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저녁 9시에 돌아가는 기차를 탔다. 오랜만의 교육이 피곤했던지 깜박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목포였다. 승객들이 광주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내렸을 때 본인은 전혀 듣지 못해 계속 자고 있었던 것이다. 늘 장거리 여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도착 지점에 신경을 써야 하기에 마음이 불안해서 자다가도 자동으로 눈이 떠지게 마련인데 어지간히 피곤해보다고 했다. 다행히 광주로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할 수 있었지만, 먼 길을 돌아오니 시간은 이미 새벽이었던단다.

예전에 버스의 안내방송도 운전기사 맘대로 틀었다 꺾다 하던 시절이 있었다. 길치인 내가 어찌다가 잘 모르는 약속 장소로 이동할 때면 음성 안내가 되지 않는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버스에 오를 때 미리 묻곤 했던 적이 있다. 혹 묻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가 방송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앞으로 나아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방송 부

탁한다고 얘기했었다. “땡땡. 지금 내리실 곳은 ○○○마을, 다음은 ○○입니다”는 소리가 나와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한데 그 소리도 학생들이 무리로 버스에 타게 되면 시끄러운 이야기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러니 노선표가 있는 뒷문에 가 버티고 서 있어야만 했다. 어쨌든 건청인이라면 음성 안내라도 있으니 믿을 구석이 있다.

하지만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위와 같은 경우였다면 어떠할까? 만약 승하차하는 사람이 없어 정류장을 몇 번 건너뛰기라도 한다면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치나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도록 버스 내부에 문자로 안내해줄 안내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코자 국토해양부는 승객 운송업체에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살짝 발을 뺐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의 문자안내판 설치 비용은 서울시가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지원해주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질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또한 전자문자안내판의 의무 설치 대상에서 마을버스를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기관들의 대처를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꼼수를 부리니 말이다. 공공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 사항이 보이면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매번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며 나중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 하겠다는 지겨운 소리를 반복한다.

건청인이 그냥 읽고 넘기는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에게 단순한 광고 차원을 넘어선 길잡이고 나침반과 같다. 시민의 발을 자치하면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청각장애인도 맘 편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 **우지은**

일하는 엄마도 밥 짓기 힘들다

윤정 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둘을 데리고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한동안 남편의 폭력과 이혼으로 인한 무기력증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자신의 눈치만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무엇이랴도 해야겠다 싶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서른 중반의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지 싶어 아는 사람 소개로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분식집 일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밤 9시가 되어야 끝났다. 그나마 아이들이 어리다고 사장이 배려해준 덕에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가량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윤정 씨는 눕기 바빴다. 안 하던 일을 하느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몹시 고되었다. 그렇다보니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빨랫감도 쌓여 있기 일쑤였다. 반찬도 신경 쓰지 못해 아이들 밥상에 놓인 거라곤 김치 하나뿐이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지켜보던 윤정 씨는 시설에서 아이들 밥만이라도 해결해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임에도 윤정 씨가 살고 있는 모자복지시설과는 달리 부자복지시설에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둔 식당과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자 가정은 아버지가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모자 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가사 문제를 더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성장하면서 남성들은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그로 인해 남녀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부자시설에만 식당과 조리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성이라고 해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이 더 쉬우란 법은 없다. 물론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비교적 집안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성장해 식사 준비나 요리 같은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공동 식당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모자가정이라도 윤정 씨처럼 이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개인차는 고려하지 않고 세대주의 성별로만 서비스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모자 복지시설은 일정 기간 주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입소한 가정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곳인데, 입소 가정의 자립이나 자활에 필요한 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성별에 의해서만 시설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결혼 10년 차인 남편이 요즘 빨래 널어놓은 것을 보면 결혼 초에 비해 많이 능숙해졌음을 느낀다. 이처럼 가사노동은 성별이 아니라

훈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모·부자복지시설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기준을 성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세대의 필요성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_이연희



맘 편히 볼일 좀 봅시다

얼마 전 어느 시의 한 대학 운동장에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이 유명세를 탔다. 화장실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누드 화장실이었다.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자 관계자는 알려지기 보름 전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서둘러 시트지를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올해 초 같은 시의 한 공원에도 이와 같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바가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이런 황당한 일이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몇 해 전 불국사에도 외부 지원을 받은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이 문제가 되었다. 투명 유리에 남녀 공용이었으며, 돌계단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다. 다보탑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애인 화장실도 구경하라고, 전시용으로 만들어놓은 설치미술이었는데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또 어느 도가 주최한 '2007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 꿈나무도서관은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했다.

볼일 보는데 낯선 이성이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통념상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데도, 유독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장애인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무성적인 존재라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휠체어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 일반 화장실은 아예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했고,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변기와 세면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장애인 스스로 움직여 볼일을 볼 수 있다. 출입문은 미닫이로 쉽게 여닫을 수 있어야 하고, 물 내리는 장치도 불편이 없도록 설계해 만들어져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당사자도 공동화장실에서 분리된 듯한, 장애인 로고가 박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다. 모든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반 화장실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접근조차 어렵고, 협소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남

너 공용으로 만들어놓는 경우가 많다. 또 공간이 넓다는 이유로 장애인 화장실에 밀걸레, 세제, 고무장갑, 집게 등 화장실 청소도구를 저분하게 쌓아놓아 창고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또는 설치 기준이 있음에도 대충 만들어두어서 출입문에서부터 휠체어가 걸리고, 내부에 공간이 충분치 못해 휠체어는 밖에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화장실도 문화공간의 하나로 휴식과 편안함, 그리고 쾌적함을 두루 표방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은 구색 맞추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시용이 아니다. 누가 들어올까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맘 편히 볼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우지은**

투표소에 사전 답사 가는 부부

지난해 나와 남편은 지방선거 때 투표하기 위해 선거 전날 아파트 단지 내 투표소로 지정된 곳을 사전 답사하러 갔다. 대한민국 성인으로 투표 한 번 안 해본 아마추어처럼 보이기 싫어서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결혼 후 처음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던 때의 일 때문이다. 투표장에 우리가 들어가니, 일순간 이목이 우리 부부에게 집중되었다. 오래된 시영아파트 투표소에는 출입구가 계단과 턱으로 되어 있어, 지체장애가 있는 나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남편은 들어갈 때부터 휠체어를 문밖에 버려두고 낯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괜히 집중되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빨리 찍고 나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이 때문에 당황한 우리는 더욱 이리저리 투표장을 헤맸고,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할 새도 없이 낯익은 이름에 기표하고 얼른 투표장을 빠져 나왔다. 남편은 긴장하면 더욱 경직되는 뇌병변 장애인이어서 그런지 12월임에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 뒤로 우리는 큼직한 선거 외에는 투표소를 잘 찾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시장에 교육감

선거까지 있어 투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좀 자연스럽게 느긋하게 선거권을 누리려고 사전 답사까지 한 거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외에도 요즘에는 매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의 마음은 심란하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고 하지만 막상 장애인이 투표소를 찾아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2008년 시 교육감 선거 때 김씨 등 3명은 각각 해당 지역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출입구 계단에 임시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소 출입이 어려웠다. 또한 시각장애인 임모 씨는 시각장애인의 기표를 보조할 수 있는 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임씨를 대신해 동행한 가족이 대리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했다면 임시 경사로 등의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투표 도우미가 직접 들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을 때 쓰는 방법이어야지, 최선의 것이 아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선거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타인의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함은 당연

하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후보자에 대한 점자 홍보물을 모든 후보자가 다 제작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선거 정보를 받기도 어렵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토론회나 선거 유세 등에서 수화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받았다는 이야기도 늘 빠지지 않는다.

나도 남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니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선거철이면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한 장애인은 정작 크고 작은 선거 때면 잠시 고민에 빠지곤 한다. 투표, 해? 말아? **우지은**



8. 사회가 나를 차별하다

차별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한다.
이혼한 남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고,
예비군 훈련은 대학생에게만 관대하다.
여성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으며,
학생 아닌 청소년은 참가를 못하게 하는 국악대회까지 있다.
동성애 관련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공간이고,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학생이라고 주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4년대졸 이상만 지원 가능하고,
원격대학 졸업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살색이란 이름은 사라졌지만 살색은 여전히 유통된다.

세상의 차별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가 평등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 양육, 서류로만 확인할 수 없는 이유

결혼한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혼한 여자가 당당하게 살기에는 힘든 세상이다. 거기다 혼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혼녀가 자녀학비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해 논란이 된 일이 있다.



이혼 후 친권자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이모 씨는 교육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씨의 소속기관에서 자녀와 별거하는 동안에는 자녀학비수당 수령 자격이 없으므로 수령한 돈을 반납하라고 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않은 자녀의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항목은 1981년에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과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이혼 여성을 고려해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라고 추가했다. 원래는 가장인 남자에게만 주어지던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여성에게도 주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라는 항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주민등록표가 실제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아니면 실제 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며 사실상 조사하기도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자녀학비수당 지급 요건을 동일 호적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제한한 것은 이혼한 남성에게는 자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자격을 주고, 이혼한 여성에게는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 자격을 주는 불공평한 조항이다. 호적 제도에 의하면 부부 이혼 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으므로 동일 호적이 실질적 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 공무원이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떨어져 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표 역시도 실질적 양육 관계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호적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는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친권자를 지정한 법원의 이혼판결문 등 다른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이걸 일일이 확인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는 중앙인사위의 주장과 달리 건강보험증이나 이혼판결문을 서류로 제출하게 하고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도와주려는 제도라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는 태도, 실제 누가 양육을 하는지 확인하는 조그만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유정**

장애인은 되도록 운전하지 마세요

15년 전 20대 초반 때였다.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로 작심하고, 이른바 자동차운전 적성검사와 의료적 판별검사를 받았다. 의료적 판별검사란 장애가 운전을 방해하는지 판별하는, 말 그대로 운전 가능 판별검사다. 이 검사 당시 나를 검시한 검시관은 처음에는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유는 극명했다. 뇌병변으로 운전엔 심각한 방해요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난 애걸복걸하듯 그 검시관에게 말했다. “보라! 난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수술과 끝없는 재활로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당시 난 스스로 내 장애를 부정해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검시관은 덧붙여 신신당부하며 한마디 더 보탰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되도록 운전은 하지 마라.”

2002년 경찰청의 도로교통 시행규칙에도 이런 유사한 판별검사가 있었다. 이 규칙은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를 제외한, 손·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제1종 대형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4.8kg 이상의 힘으로 580도를 2.5초 내에 돌린 뒤 24초간 이를 유지해야만 핸들 조작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이 규칙에 따라 한 지체3급과 뇌병변 3급 장애인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뇌병변 1, 2급 장애인 또한 제2종 보통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에서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차를 잘 운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적성 여부와 차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장애의 상태 및 정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요즘은 자동차 기술이나 보조기구 기술의 발달로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데 드는 힘이 감소되고 있고, 장애로 인해 운전운동 능력 부족 또한 보조 장치의 개발로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예외 규정도 없이 신체의 힘이나 장애 정도를 운전 능력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는 대형·특수면허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도 전국의 장애인들은 1종 대형·특수면허시험을 보려면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으로만 가야 한다.**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이유다. 2009년 6개월간의 자료를 보면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57명이 경제적·시간적 손실 및 이동의 불편 등을 감수하며 서울로 와서 시험에 응시했다. 더욱이 응시자들은 연습할 운전면허학원이 없어, 기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며 대형버스 및 특수차량(트레일러, 레커)의 운전 방법을 익혀야

했다.

다행히 이 문제가 불거지자 운전면허관리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권에 위치한 시험장 한 곳에 대해서는 기능시험 차량을 등록해 출장시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15년 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 **공병조**

동성애자, 그들도 존재한다

지난해 텔레비전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다. 이 드라마에는 동성애 커플이 비중 있게 등장했고, 이것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 드라마를 방영했던 방송사에는 매일 항의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어느 단체에서는 일간지에 동성애 비난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광고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며 방송국에서 책임져라'였다.

일방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성애를 그렸다는 이유로 드라마를 욕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자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없어져야 한다는 반박 댓글도 많았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불편하고 꺼림칙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성애자인 4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한국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이라는 사이트에 급하게 접속할 일이 생겼다. 마침 근처에 PC방이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PC방에서 그 여성은 낭패를 봤다. 동성애자인권 사이트는 접근 자체가 불가



능했다. 알고 보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그들의 사이트를 차단했던 것이다. PC방 컴퓨터에는 법에 따라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강제 설치된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심의기준을 근거로 동성애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동성애 관련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개별 심사기준을 보니 동성애는 수간이나 변태성행위와 같은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내용이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통계 편람에서는 1974년에 이미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993년에 발간한 국제 질병

분류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 표준 질병 분류를 보면 성적 지향성 그 자체는 장애와 연관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하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등학교용)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에는 성적 지향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다.

이런 규정이 문제가 되고 난 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동성애는 배우라고 해서 배워지는 것도, 배우지 말라고 해서 안 배워지는 것도 아니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대상도 아니다. 그냥 그들은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 소수자는 약자 이기에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려고 노력한다. 우리 사회도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김성혜**

32세 넘으면 못 가는 유학

2005년 개봉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란 영화가 있다. 스피드를 사랑하고 최고의 스피드를 내보는 것이 꿈인 버트 먼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주인공 버트는 자신의 오토바이 ‘인디언’을 타고 오랜 꿈이던 미국 보너빌에서 열린 경주대회에 도전한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버트는 대회 최고기록을 수립한다. 그가 이 꿈을 이루는 나이는 68세였다.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감동적이었다. 버트 먼로가 옆집 꼬마 톰에게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꿈을 끝까지 좇지 못한다면 식물인간과 다름없다.” 영화는 꿈을 꾸거나,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많이 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책을 쓴 서진규 씨는 58세에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필집 <화장하는 CEO>로도 알려진 코리아나 유상옥 회장은 55세에 창업해 5년 만에 업계 3위 기업으로 급성장시켰다. 올 7월에는 제1회 혼불문학상에 당선된 최문희 씨는 77세의 늦

꿈이 작가라는 것이 알려져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나이만 보고 가능성의 문을 처음부터 닫아버리는 일이 많다. 올 4월,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다가 나이 때문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도에서는 도비유학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하고 있었다. 도비유학 제도의 취지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 유학 종료 후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이유로 장학생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질적인 개념이라 사회 기여도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무엇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있다. 또한 사회 기여도는 단순히 나이 또는 기간과 비교해 나이가 적거나 사회활동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얼마나 오래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측정해 고려한 것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학업 지원, 특정 학문의 장려와 연구를 돕기 위한 것

이다. 그래서 국비 유학생의 지원 자격에도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에서 도비 유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도비 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보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꿈을 꺾어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동일한 나이라도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가! **김성혜**

세입자 주거이전비, 학생은 제외

이웃에 사는 준호 엄마의 얼굴이 어두웠다.

“12월까지 가게 비우라고 최후 통보가 왔대요.”

지난해부터 준호네 마트가 세 들어 있는 건물 주변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준호 아빠는 여기저기 가게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쉽사리 맞춤형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준호네는 크게 거래하는 단골이 제법 있어서 웬만하면 기존 가게 근처로 이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괜찮다 싶으면 세가 터무니없이 비쌌다. 어쩔 수 없이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내려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상권이 좋은 곳엔 프랜차이즈 마트들이 이미 들어서 있다고 했다.

“4개월치 수입만큼 주거이전비로 보상해준다는데 그것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한숨을 쉬는 준호엄마에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말로 위로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K대학에 다니는 성준 씨도 재개발로 인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성준 씨는 학교 인근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해왔는데, 그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성준 씨는 이사가 불가피해 주거이전비를 신청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구역 안에 거주한 다른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주면서 성준 씨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준 씨가 학생이라서 성준 씨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한 학업 수행을 위해 자취하는 학생에게 주거지는 일시적, 보조적 생활 근거지에 불과해 생업 유지의 기반을 해당 주거 지역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학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학생을 제외해도 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러한 이유로 성준 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했다. 성준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세 계약을 맺고, 주거용 건물에서 약 2년간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과 구분될 만한 명백한 차이가 없다. 또 학생이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각 세입자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일 것이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분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거나 공부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이라면 자취하는 그곳에 모든 생활기반을 둘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연희**

전과자도 엄마랍니다

가을이 깊어져 차가운 바람이 불자 발목이며 무릎이 시큰시큰하다.

“그게 다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조리 잘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친정엄마 말처럼 아이 낳고 조리를 잘못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둘째 아이를 낳은 후부터 찬바람만 불면 뼈마디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맞다. 엄마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산후조리를 다시 하면 좋아진다고 하시지만 열 번을 생각해도 그 고생은 다시는 못할 노릇이다.

아저씨 셋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아줌마 셋이 모이면 애 낳은 이야기라고, 출산은 여자에게 참 할 말 많은 힘든 일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구치소에서 출산하고 모두의 도움으로 아기를 키우는, 영화 〈하모니〉의 주인공이나 다큐 〈사랑〉의 19세 미혼모 재소자의 육아 이야기는 같은 엄마로서 눈물을 짓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만큼 몽클하지도 녹록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임신 17주였던 김씨는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 후 출산이 임박해지자 두 달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출산 후 2주 만에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한 달이나 남은 김씨를 신생아와 함께 교도소에 재수감했다.

현행법은 임신 6개월 이상인 임신부 또는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산모인 경우 모성보호를 위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음에도 김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것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신생아와 함께.

게다가 김씨가 수용된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여성 재소자가 있음에도 규정에 적합한 임신부실이나 양육유아실도, 산부인과 검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아기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라는 특수한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 거실에 수용되었으며, 출산 한 달 이후 필요한 산후 검진도 받을 수 없었다. 임신부 수용자들은 호송과정에서 빗어지는 불편함 때문에 적절한 외부 진료를 꺼리게 되고, 이는 곧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김씨에게 산후조리를 위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건의한 사실이 없는 등 김씨는 산후 조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제공받지 못했다.

산후 조리는 출산 여성이 꼭 거쳐야 하는 건강 회복 단계다. 출산으로 탈진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의학계에서는 보통 6~8주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의보감>에는 출산 후 100일간 산후 조리를 위해 외

출을 자제하며 몸을 편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김씨는 산후 조리를 통해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산모의 기본 권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또한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출산 후 두 달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임신부실이 있는 곳, 영유아와 함께일 경우에는 양육유아거실이 있어야 함은 물론 산부인과 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춘 교정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녀가 비록 오늘 재소자 신분이라도 내일은 평범한 엄마일 수 있다. 아기 낳을 때 서운했던 것은 평생 간다고 하지 않던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모성이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유수정

국가기술자격, 4년대졸 이상만 드립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며 친구가 공부를 다시 해보겠다고. 집안 사정으로 가지 못했던 대학에 이제라도 가야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별히 전공하고 싶은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해서라면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권하는 내게, 친구는 가진 사람은 모른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자격증? 야! 그것도 대학 나온 다음 얘기야. 뭘 해 먹고 살아도 대학은 나와야 먹고살기 편하다던 엄마 말이 하나도 안 틀리더라.”

불혹의 나이에도 학력 때문에 나름 기가 죽었던 모양이다. 애들 학교 반모임에 나가거나 동네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도 나이 대신에 서로의 학번을 묻는가 하면,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교사도 부모의 전공을 물으며 아이의 적성에 대해 상담해주더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왠지 모를 부끄러움으로 남더라.

대학 졸업자를 우대하고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반박할 말이 없었다. 하물며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학력 간의 벽이 있는데 더 말해 무엇하랴.

국가기술자격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도 실무 경력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대나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사시험 또한 응시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요구하는 실무 경력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자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으나, 전문대에서 2년간 관광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응시하려는 산업기술의 실무 경력 1년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기 관련 기술을 공부했다 해도 실무 경력 2년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사나 산업기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해 기초지식과 적용 가능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전공과 무관하게 단지 대학을 나오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높은 단계의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기도 하며, 업무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 기간을 인정해준다면 그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직무 분야의 전공 여부는 물론 실업계 고등학

교 출신자의 취득자격증 직무 분야에 대한 전공 교육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분명히 학력이라는 잣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다시 입시의 계절이 왔다. 대학진학률 80%로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 진학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69만 명의 수험생이 합격자 발표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등록금 전쟁 속에서도, 88만원 세대라는 한탄 속에 대졸자는 물론 석·박사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학력 차별 혹은 학력 우대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_유수정**

원격대학 졸업생은 대졸자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 카피라이터입니다”라고 말을 꺼내면 “어머 무슨 카피 쓰셨죠?”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카피라이터 재밌죠?”라는 말이 따라서 나온다. 광고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듯 순차적이다. 유행어 하나 없는 개그맨이 있는 것처럼 유명한 카피 없는 카피라이터도 존재하는데, 묘하게도 사람들의 눈에는 텔레비전 광고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카피는 카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유행어 하나 없는 개그맨 쪽이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연차가 10년이 넘어서야 할 수 있게 됐다. 한 분야의 일을 10년 이상 하면 달인이라는 칭호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실력으로는 먹고살 만하다는 ‘무언의 라이선스’를 얻게 된다. 발급 기관이나 인증서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산전수전에 공중전을 겪은 10년의 세월이 있다는 이야기다. 데뷔 15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유행어나 개인기 없이도 이름이 알려지는 개그맨처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5년 전, 카피라이터 명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주눅이 들어 좁은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다. “뭐

전공하셨어요? 학교는 어디?”라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대학원을 택해 크고 비싼 간판을 얻었다. 물론 대학원에서 광고를 전공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학력이라는 차별을 크게 겪은 적은 없지만, 나 역시도 보이지 않은 차별을 겪어왔기에 ‘간판을 따야지’라고 생각했다.

나처럼 자격 때문에 불합리한 경우를 당한 이들이 있다. 5~6년 전,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되었다. 이는 곧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당시 이런 제한은 학교 사회복지사에게는 교사와 대등한 전문적 소양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원격대학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교육이 이뤄지므로 학교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현장실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특히 일부 원격대학 학생들이 브로커를 통한 대리 수강, 대리 실습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원격대학 졸업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제한한 이런 이유에는 몇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 무엇보다 평생교육법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실시 목적을 보면 활동 영역이나 역할이 사회복지사와는 크게 다

르고 교사와는 비슷하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 가능하며 그 자격 기준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동등하다고 보고 있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원격대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존재했다.

규격화된 간판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보다는 겉보기 등급이나 잣대로 보는 게 아닐까.

나는 광고 카피를 잘 만들고 싶었다.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학교 때 다른 분야를 공부했기에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간판보다는 내면의 열정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시험,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방면에서도 생겨났으면 좋겠다. 겉보기 등급의 응시 자격을 논하기보다는 응시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측정할 수 있는 발명품이라도 나온다면 좋을 텐데... **서미현**

이혼한 형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



동현 씨는 요즘 한숨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형이 사업 실패와 함께 이혼을 하고 동현 씨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동현 씨는 비록 둘째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기에 형제들 사이에서 장남 구실을 하고 있었다.

오늘 동현 씨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증에 형의 이름을 넣으려고 신청했는데 “이혼한 형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현 씨 형의 피부양자 등재를 거절했기에, 직접 공단으로 따지러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결혼 전에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던 형은 부모님과 함께 동현 씨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기에 동현 씨는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이해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가입자 본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동현 씨는 형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단에 찾아가 따지고 드는 동현 씨에게 창구 담당 직원은 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미혼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지만, 형제자매가 미혼이 아닌 이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었다.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고,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만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형이 지금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이혼하고 저희 집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소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가입자와 이혼한 형제의 실질적인 부양관계 및 경제적 능력 여부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기 어렵기에 결혼 여부 등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동현 씨는 국민건강보험의 이런 획일적인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로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자면 자신의 형처럼 이혼 후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신에게 의탁해 소득을 공유하며 생활을 같이하는 형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주장대로 이혼한 형제자매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일이지, 일괄적인 기준으로 가부를 정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은가.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기준이었다.

동현 씨는 동생 집에 얹혀살며 어깨가 처져 있는 것이 보기 싫어 고운 말 한번 건네보지 않은 형이지만 혹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형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나 싫어 걱정이 앞선다. 저녁에는 형이 좋아하는 곱창전골이라도 함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_유수정**

국방의 의무, 대학생은 봐드립니다

도형 씨와 철규 씨는 군대 동기다. 나이도, 좋아하는 가수도, 즐겨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같았던 둘은 사격 점수가 좋아 포상휴가를 함께 받은 이후로 군대 내 단짝이 되었다. 그 우정 변치 말자며 제대 후에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다. 그런데 오늘 도형 씨는 철규 씨와의 술자리에서 마음이 상했다. 예비군 훈련이 화근이었다.

“와! 벌써 우리가 제대한 지 1년이 넘었어. 예비군 훈련 통지 나왔더라. 진짜 아저씨가 된 기분이야.”

“예비군 훈련 가면 아저씨냐?”

“복학생이라는 딱지도 부담스러운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 빠졌다고 하면 예쁜 후배들이 완전히 아저씨라고 생각할 거 아냐. 넌 다녀왔냐?”

“올해 아직...”

철규 씨보다 제대가 일렀던 도형 씨는 올해 벌써 예비군 2년차다. 제대 후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가게를 하고 있는 도형 씨는 지난해 첫 예비군 훈련에 사흘이나 가게 문을 닫아야 했기에 손해가 이만저만

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답답했다.

도형 씨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마지막 소주잔을 들이켜며 철규 씨가 던진 한마디였다.

“같은 과 동기들하고 가는 거니까 하루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갔다 와야지 뭐. 하긴 8시간만 견디면 점심도 주고 차비도 주고 지겨운 수업 결석 처리도 안 되니까 그걸로 위안 삼는다.”

제대 후 철규 씨는 다니던 대학에 복학했고, 도형 씨는 창업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부대 내에서는 형제처럼 지낸 사이지만 학생으로 돌아간 철규 씨는 학생 예비군 신분이 되어서 1년에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었고, 일반 예비군이 된 도형 씨는 3일간 출퇴근 훈련과 함께 향방 작계 훈련까지 총 36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신분이 대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1971년부터 학교 군사교육 및 교련 이수를 받은 학생 신분 예비군에 대해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제)조치하기 위해 학생예비군 훈련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군사훈련(교련)이 폐지된 이후에도 학업 여건 보장이라는 이유로 계속 보류 적용되고 있다.

도형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연초에 동원지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생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재학생에 대해 보류 지정한다지만,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의무훈련 시간이 4.5배나 많아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

아볼 수 없는, 평등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학생이 불리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 근로자의 근로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처럼 별이를 접고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예비군 훈련이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학생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예비군 훈련 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방의 의무조차 성적순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도형 씨는 생각했다. 단순한 행정 편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에 억울한 마음 또한 누를 길이 없었다. 도형 씨는 처음으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작은 후회가 들었다. 유수정

누가 동래학춤을 남성무라 했나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별칭과 함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음악감독이자 교수인 박칼린이 MBC <황금어장> '무릎팍 도사'에 나와 인간문화재 고(故)박동진 명창의 전수자가 될 뻔한 사연을 털어놓은 일이 있다. 사연인즉슨 박칼린이 서울대 대학원 국악과에 다니던 시절 박동진 선생의 눈에 띄어 선생이 자신을 전수자로 삼고자 했으나, 인간문화재단에서 외국인일 어떻게 전수자로 삼느냐며 박칼린의 국적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것.

한 국가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일, 그에 앞서 이에 대한 자격조건 규정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일일 것이다. 외국인은 한 국가의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겠지만, 국적이 아닌 성별을 이유로 무형문화재 전승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동래 지방에서 전승되는 동래학춤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 가입해 1998년 동래학춤 전수 조교로 선정되고 협회의 이사까지 맡은 여

성이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2006년 동래학춤 보유자 후보 선정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동래학춤이 원래 남성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성이 아무리 남성 복장을 하고 동래학춤을 추더라도 신체 구조 때문에 남성과 같은 춤사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설명이다. 전수 조교는 동래학춤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이 여성에 한해서만 허한 것이었고, 향후 전수 조교와 보유자 후보는 남성 무수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실제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문화재 보존의 기본 원칙이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또한 무형문화재는 남성이 할 수 있는 분야, 여성이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동래학춤의 경우 구음(소리)은 원래 여성이 담당했던 분야이므로 현재 예능보유자가 여성이고, 춤(무수)은 남성 춤이므로 전수 조교 이상은 남성 무수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보니 동래학춤은 관련 문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나온다. 실제로 동래학춤이 남성 춤이라는 주장은 전문가마다 견해가 각기 다르고, 동래춤이 남성 복장을 하고 추는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고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래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는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지정 전에는 남녀가 함께 전승했다고 하니 동래학춤이 남성 춤일

거리는 단정은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 보유자에 대해 명시한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기준 또한 그 사람이 가진 예능, 즉 그 춤을 얼마나 몸에 잘 체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준일 뿐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그 예능을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시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성 차별을 했다. 하나는 동래학춤이 흰 도포와 검정 갓을 쓰고 추는 한량춤이라고 해서 충분한 근거 없이 남성 춤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법규에 명시된 예능을 기준으로 보유자를 선정하기 전에 성을 근거로 보유자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한 국가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또 까다로워야 한다. 기준 하나하나를 정하는 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요, 선정에서도 그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의 차별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존을 위해 성별에 구분을 두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이수지**

너무 잘해서 대회 참가 금지

20년 가까이 라켓볼 동호회에서 활동해오신 아버지가 요즘 들어 운동을 하시지 않기에, 나이 들수록 운동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숨을 쉬신다.

동호회 창립 멤버인 아버지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나 근래 들어 라켓볼장에 나가도 젊은 회원들이 게임에 끼워주지도, 혹 한 게임 붙자고 할까봐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 그저 회식에서 밥이나 사는 원로 회원으로 남아버렸다며,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다 하신다. “노인네 봐주면서 게임하니 재미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니 오히려 코웃음을 치신다.

“너 나랑 한판 붙어볼래? 웬만한 젊은이들도 두세 게임 뛰고 나면 힘겨워하는데 난 끄떡없다고. 지들이 먼저 겁먹고 피하는 거야.”

그런 모양이라고, 나이 먹어도 나이 먹은 티 안 나는 영감님이 무서워 배척하는 모양이라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전국 장년부 클라이밍동호회 회원들은 2004년 9월 국제산악연맹

(UIAA) 주최 월드컵 등반경기(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자격이 되지 않았다. 대한 산악연맹회가 ‘만 28세까지’로 참가자의 나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나이 제한에는 이유가 있었다. 국내 등반경기 선수층이 매우 얇은 현실에서 몇몇 장년 선수가 국내 선발대회에서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며 월드컵 등반경기 대회 참가 자격을 계속 갖게 되자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 참가 기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해 경험도 쌓고 기량을 향상시켜야 국내 등반경기도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장년 선수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랬단다.

너무 잘해서 대회에 나갈 수 없다니. 내가 알고 있는 스포츠 정신은 능력 있는 선수에게 국제대회를 포함한 대회 출전 기회와 혜택을 주어서, 선수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등반경기 선수의 기량은 30대에 절정을 이루며, 장년 선수들의 경험 축적 및 실력 향상이 후진 양성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해봐도 대한산악연맹회가 28세로 참가 연령에 제한을 둔 것은 국내 등반경기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좀 더 많은 선수에게 국제대회 출전 경험을 주고 싶었다면 대회 출전 횟수를 제한하는 등 더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볼 일이다. 더구나 사회 통념상 연장자가 젊은 사람보다 체력도, 민첩성도, 기술 습득력도 떨어지기에, 나이는 스포츠 선수에게 핸디캡이 될 수 있음에도 훌륭한 기량을 자랑하는 장년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보다 그

들이 누려야 할 평등권을 침해하다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나이 차별은 이유도 가지가지, 변명도 가지가지다. 기운 없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일하기 힘들실까 통장이나 소방공무원, 아파트 경비원의 나이가 제한되었는가 하면, 눈이 침침해 숫자 읽기 힘들실까 수도검침원에서 빠져달라고 하고, 아줌마가 타주는 커피는 마시기 부담스러워서 아가씨만 뽑는 회사도 많다. 요새말로 ‘빡센’ 외국어 공부하다가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어 나이 많은 공무원은 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직원들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당할까 연장자 채용을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

그런데 연장자들은 이야기한다. 나이 떴고 계급장 떴고 당당히 붙어보자고. 대우도 염려도 배려도 질투도 사절이라고. 용기 내어 붙어볼 일이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정정당당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또한 하루하루 나이 먹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예의다. **유수정**

학생 아닌 청소년은 국악도 못 하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사는 동네에 고등학생인 자신의 조카가 전학할 만한 학교가 있느냐고 물어왔다. 친구의 조카 녀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곤충 키우기가 취미인 조카는 성향이 맞는 친구도 없고 좋지 못한 학업 성적으로 선생님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더니, 끝내 학교에 다니기 싫다며 방안에 틀어 박혔단다. 친구는 언니에게 “학교에서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자퇴 후 좋아하는 일을 시키고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말을 했다가 원망만 들었다. 모르는 소리 말라고, 가족의 생활권을 포기하고 이사를 해서라도 전학을 하려는 이유는 10대는 학생 신분이 어야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사실 얼마 전 학부모 모임에서도 아이들의 자퇴 이야기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만 인근의 한 고교에서는 16명이, 또 다른 고교에서는 14명의 아이가 자퇴를 했단다. 대입에 유리하도록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자퇴를 선택한 아이도 많지만, 공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를 떠나거나 각종 폭력과 따돌림, 상처 때문에 학교 밖으로 떠밀리는

아이도 생각보다 많았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 연령대의 약 3.8%, 고등학생 연령대의 약 7.5%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났을 때 감수해야 하는 뭇은 공교육의 포기만이 아니었다. 물론 청소년증이 생겨 비(非)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생겨나고, ‘학생 할인’이 아닌 ‘청소년 할인’이 시행되는 등, 비학생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학생 청소년들은 여전히 기성세대가 미처 깨닫지 못한 곳에서 차별과 왜곡된 시선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학생 대상 각종 대회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참여를 막는 것이 대표적이다. **완산전국국악대제전도 청소년과 학생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례다. 이 대전은 학생들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해 결국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다.** 대회 경연 부문이 청소년부가 아닌 학생부이며, 개최 지역 최고 교육기관장인 전라북도 교육감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학교에 소속된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해 지원 부문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부와 일반부만으로 구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대회 참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교육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이 우리 사회가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 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해야 한다.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과 학문을 습득함은 물론 대회에 참가해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21세기를 사는 아이들에게 열린 사고와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배움을 선택하는 방식에서는 ‘학교’만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모양새가 아쉽다. 탈학교를 선언하고 학생이 아닌 그냥 청소년이기를 택한 아이들이 세상을 교과서 삼아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성인 세대가 해야 할 백년지대계의 또 다른 교육 방식이지 않나 싶다.

친구는 지금 조카가 다닐 만한 대안학교를 찾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 받기 쉬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조카가 곤충을 키우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차별없이 행사하길 바란다. **_유수정**

나는 살색 해도 너는 살구색 해라



아들 키우는 엄마는 다 안다. 아들 잔소리가 시집살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도 둘째 녀석이 냉장고에 붙여놓은 쇼핑 목록을 보고 잔소리 준비 자세로 앞에 섰다.

“엄마, 살색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는 우리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쇼핑 목록에 써 넣은 ‘살색 스타킹’이 화근이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살색이라고 하면 무슨 색깔인지 알아들을 수 없잖아. 이제 우리도 다문화, 세계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알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혼계는 끝이 없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에 대해 배우며 살색에 대한 토론을 했던 모양이다.

살색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나인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크레파스와 물감에 있는 살색이라는 색명은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전달하며, 황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원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공업규격 색명을 단순히 번역해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이라고 명명했고, 크레파스 생산업체들은 KS에 근거해 살색으로 표기해왔었다.

2002년 기술표준원은 살색이 “황인종을 제외한 다른 피부색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평등권 위배”라는 주장을 인정하고 연주황으로 개정고시 했으며, 다시 “연주황은 느낌이 모호하고 한자라서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살구색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부모 세대의 크레파스 속에 등장하던 살색은 불명예(?) 되진했고, ‘살색이라는 표현은 국제화로 국가 간·인종 간 교류가 활발한 21세기에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하고 시대적 흐름에 반한다’는 기사를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다.

그러나 이름이 바뀐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살색은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생각난 김에 아이들 책상을 뒤져봤다. 크레파스나 색연필에는 연주황색 혹은 살구색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살색 테이프나 살색 마커는 아직도 존재했다. 문구류뿐 아니다. 살색 스타킹이

나 비치지 않는 살색(스킨색) 속옷, 살색 반창고, 살색 화장품, 식물도감 속 살색구멍버섯까지.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 광고를 비롯해 신문이나 방송들은 스타 ○○의 살색 드레스 등 살색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이 낫다. 학교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피부색만이 살색이 아니라는 것을, 살색은 사람의 수만큼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보다 어른들이 습관처럼 쓰는 살색에 아이들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 색연필 색명만 살구색으로 바꿔놓고 어른들은 계속 살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나는 바람뽕 해도 너는 바람뽕 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외국인 숫자 126만. 더 이상 우리의 해묵은 관습이나 편협한 습관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아이의 학교에도 살구색이 아닌 피부색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한다. 아이가 그 친구에게 살색 색연필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고쳐나가야겠다. 당장 오늘부터 살색 스타킹을 살구색 스타킹으로 부르려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걱정이다. **_유수정**

글쓴이 소개

공병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 모니터링단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성혜

월간 <행복한 인생>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집 웬수들> <여성CEO,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등을 공동 집필했다.

서미현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에서 '광고카피론' 강의, 저서로는 <오늘도 집밥> <숏츠> 등을 펴냈다.

우지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격월간 <인권> 시민기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수정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지역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 <희망노트> 등을 집필하고, 공저로 <말문을 열어주는 이야기 창고> 등이 있다.

이수진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를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현재 격월간 <인권>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수진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저로 <2008 한국의 외투기업, 노사관계 성공 보고서 Yes Korea!> <상생의 날개를 달다> 등이 있다.

이연희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늘푸른 환경일기> <맛있는 요리 일기> 등을 공저했다.

이영화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 <키다리 아저씨> 각색, <여자친구(가제)> 각본 등을 진행했다.

이유정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창의적 글쓰기'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녀의 프라다백에 담긴 책>, <한 쌍의 바퀴벌레> 등을 펴냈다.

추현숙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학원사용설명서> <아이가 초등 5학년이면 중학생활을 준비하라> 등을 펴냈다.